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 예산대비 83.6% 증액된 43억 5천 8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2,374,386	4,358,360	1,983,974	83.6
세외수입	2,274,386	3,848,360	1,573,974	69.2
경상적세외수입	858,416	1,884,979	1,026,563	119.6
재산임대수입	270,278	629,539	359,261	132.9
사용료수입	579,038	1,226,800	647,762	111.9
사업수입	9,100	20,640	11,540	126.8
이자수입	0	8,000	8,000	-
임시적세외수입	1,415,970	1,963,381	547,411	38.7
과징금및과태료등	111,670	123,340	11,670	10.5
기타수입	720,268	1,201,500	481,232	66.8
지난연도수입	584,032	638,541	54,509	9.3
보조금	-	510,000	510,000	-
국고보조금 등	-	510,000	510,000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	510,000	510,000	-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률(%)	산출기초
계	2,374,386	4,358,360	1,983,974	83.6	
경상적세외수입	858,416	1,884,979	1,026,563	119.6	
재산임대수입	270,278	629,539	359,261	132.9	
공유재산임대료	270,278	629,539	359,261	132.9	-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 청년청 사용료
사용료수입	579,038	1,226,800	647,762	111.9	
기타사용료	579,038	1,226,800	647,762	111.9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 청년청 관리비
사업수입	9,100	20,640	11,540	126.8	
기타사업수입	9,100	20,640	11,540	126.8	- 마포마을활력소 상가 임대수입
이자수입	0	8,000	8,000	-	
기타이자수입	0	8,000	8,000	-	-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415,970	1,963,381	547,411	38.7	
과징금및과태료등	111,670	123,340	11,670	10.5	
변상금	111,670	123,340	11,670	10.5	- 서울혁신파크 입주 기관 변상금
기타수입	720,268	1,201,500	481,232	66.8	
시·도비반환금수입	365,000	838,680	473,680	129.8	- 자치구 보조금 집행반납
그외수입	355,268	362,820	7,552	2.1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난연도수입	584,032	638,541	54,509	9.3	
지난연도수입	584,032	638,541	54,509	9.3	- 서울혁신파크 변상금 등 미수납분
보조금	-	510,000	510,000	-	
국고보조금	-	510,000	510,000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	510,000	510,000	-	- 공동체공간 모니 터링 연구 -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운영

2. 세출예산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 세출예산은 1,097억 4천 7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21억 3백만원 대비 7.5%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도(당초)	2019년도	2018년 대비 증감	증감률	
총계	102,103,079	109,746,566	7,643,487	7.5	
행정관리	소계	102,103,079	109,746,566	7,643,487	7.5
	행정운영경비	328,659	339,890	11,231	3.4
	사업비	101,774,420	109,406,676	7,632,256	7.5

- 2019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현액		증감	비율(%)
합계	102,103	114,792	109,747	7,644	7.5
사회혁신담당관	17,328	22,630	17,135	△193	△1.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17,172	22,474	16,980	△192	△1.1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17,172	22,474	16,980	△192	△1.1
서울혁신파크 운영	8,886	8,886	8,098	△788	△8.8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4,707	9,389	3,185	△1,522	△32.3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876	1,006	1,257	381	43.5
공유서울 확산	1,515	1,647	1,441	△74	△4.9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1,078	1,437	2,859	1,781	165
강남구 공구도서관 운영(시민참여)	50	50	-	△50	-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시민참여)	60	60	-	△60	-
서울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시민참여)	-	-	140	140	100
행정운영경비	156	156	155	△1	△0.6
기본경비	156	156	155	△1	△0.6
기본경비	156	156	155	△1	△0.6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현액		증감	비율(%)
민관협력담당관	5,305	5,305	7,517	2,212	41.7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5,256	5,256	7,464	2,208	42.0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5,256	5,256	7,464	2,208	42.0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479	479	515	36	7.5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1,952	1,952	3,241	1,289	66.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295	2,295	2,397	102	4.4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530	530	692	162	30.6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	-	250	250	100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	-	345	345	100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	-	24	24	100
행정운영경비	49	49	53	4	8.2
기본경비	49	49	53	4	8.2
기본경비	49	49	53	4	8.2
지역공동체담당관	34,598	39,930	40,364	5,766	16.7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34,563	39,895	40,325	5,762	16.7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34,563	39,895	40,325	5,762	16.7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7,173	12,805	6,563	△610	△8.5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392	392	543	151	38.6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5,770	5,770	8,326	2,556	44.3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657	5,657	5,482	△175	△3.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2,598	2,598	1,779	△819	△31.5
지역협치 활성화	3,103	2,803	3,534	△431	△13.9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	-	50	50	-
우리마을 유희공간, 우리마을 유희~공간으로!(시민참여)	100	100	-	△100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시민참여)	2,460	2,460	2,388	△72	△2.9
합정동 꾸머 로드(시민참여)	10	10	-	△10	-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시민참여)	20	20	-	△20	-
지역기반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시민참여)	30	30	-	△30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7,050	7,050	11,100	4,050	57.4
우리동네 마을밥집 지원(시민참여)	200	200	-	△200	△100.0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시민참여)	-	-	50	50	100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현액		증감	비율(%)
사람이 아름다운 약초마을 만들기(시민참여)	-	-	10	10	100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주인 되기(시민참여)	-	-	500	500	100
행정운영경비	35	35	39	4	11.4
기본경비	35	35	39	4	11.4
기본경비	35	35	39	4	11.4
청년정책담당관	42,556	44,568	42,000	△556	△1.3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42,525	44,537	41,966	△559	△1.3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33,660	33,660	27,991	△5,669	△16.8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32	1,732	1,732	-	-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이차지원	403	403	340	△63	△15.6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120	120	220	100	83.3
서울 청년활동 보장	21,010	21,010	15,030	△5,980	△28.5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3,396	3,396	3,911	515	15.2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6,509	6,509	6,070	△439	△6.7
청년활동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490	490	28	△462	△94.3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	-	660	660	100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8,865	10,877	13,975	5,110	57.6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3,749	3,749	3,140	△609	△16.2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332	332	932	600	180.7
서울청년네트워크 운영	-	-	785	785	10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3,547	5,202	7,195	3,648	102.9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130	130	133	3	2.3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	537	894	590	53	9.9
청년 인생설계 학교	300	300	680	380	126.7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	50	50	-	△50	△100.0
청년활동 공간 청춘빨당 리모델링	220	220	-	△220	△100.0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DB 구축	-	-	160	160	100
창작의 시대 : 서울청년들(시민참여)	-	-	360	360	100
행정운영경비	31	31	34	3	9.7
기본경비	31	31	34	3	9.7
기본경비	31	31	34	3	9.7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현액		증감	비율(%)
갈등조정담당관	895	895	1,470	575	64.2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872	872	1,446	574	65.8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872	872	1,446	574	65.8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61	61	61	-	-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190	190	229	39	20.5
갈등관리 역량강화	51	51	71	20	39.2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36	236	246	10	4.2
갈등관리 실태평가	39	39	39	-	-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295	295	295	-	-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시민참여)	-	-	505	505	100
행정운영경비	23	23	24	1	4.3
기본경비	23	23	24	1	4.3
기본경비	23	23	24	1	4.3
인권담당관	1,421	1,464	1,261	△160	△11.3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386	1,429	1,225	△161	△11.6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1,386	1,429	1,225	△161	△11.6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1	221	205	△16	△6.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85	85	85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42	42	50	8	19.0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5	385	385	-	-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79	79	89	10	12.7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37	180	154	17	12.4
인권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68	68	68	-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	32	32	-	-
서울 인권 컨퍼런스	319	319	139	△180	△56.4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8	18	18	-	-
행정운영경비	35	35	36	1	2.9
기본경비	35	35	36	1	2.9
기본경비	35	35	36	1	2.9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19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43억 5천 8백만원으로, 그 상세내역 및 산출기초는 다음과 같음.

<2019년도 세입예산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 대비 증 감	증감율 (%)	산출기초
계	2,374,386	4,358,360	1,983,974	83.6	
세 외 수 입	2,274,386	3,848,360	1,573,974	69.2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58,416	1,884,979	1,026,563	119.6	
공 유 재 산 임 대 료	270,278	629,539	359,261	1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 587,639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청 등 : 568,740천원 - 수익목적시설 : 12,871천원 - 푸드트럭 등 : 6,028천원 ○ 청년청 사용료 : 41,9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6천원(단체당 평균사용료)×54개 단체
기 타 사 용 료	579,038	1,226,800	647,762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 1,165,3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비 757,662천원 - 주차비 357,500천원 - 대관료 15,280천원 - 이용료 34,896천원 ○ 청년청 관리비 : 61,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614천원('18년 부과분)*1.03 ※ 물가 3% 상승 예상
기 타 사 업 수 입	9,100	20,640	11,540	1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 마을활력소 상가 임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20천원(월임대료) * 12개월
기 타 이 자 수 입	0	8,000	8,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시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이자 수입 반납금 8,000천원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415,970	1,963,381	547,411	38.7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 대비 증 감	증감율 (%)	산출기초
변상금 및 위약금	111,670	123,340	11,670	10.5	○ 서울혁신파크 기존 입주기관 변상금 - 120,928천원('18년 부과분)*1.02
시·도비반환금수입	365,000	838,680	473,680	129.8	○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예상액 - '18년 공유촉진 지원사업 집행잔액 : 20,000천원 - '18년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 집행잔액 : 30,000천원 - '18년 찾동 마을사업비 집행잔액 : 144,680천원 - '18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집행잔액 : 100,000천원 - '18년 지역협치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 280,000천원 - '18년 시민참여예산 집행잔액 : 264,000천원
그 외 수 입	355,268	362,820	7,552	2.1	○ 민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예상액 - '18년 공유촉진 보조금 집행잔액 : 15,000천원 - '18년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 105,000천원 - '18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 138,260천원 - '18년 마을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 80,000천원 - '18년 우리동네 마을밥집 집행잔액 : 20,000천원 - '17년 인권담당관 보조사업 집행잔액 : 4,560천원
지 난 연 도 수 입	584,032	638,541	54,509	9.3	○ 지난연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 사회혁신담당관 : 568,420천원 - 지역공동체담당관 : 70,121천원
보 조 금	-	510,000	510,000	-	
국 고 보 조 금 등	-	510,000	510,000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 대비 증 감	증감율 (%)	산출기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	510,000	51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담당관 -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 10,000천원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 500,000천원

■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서울혁신파크의 본격적인 조성 등에 따라 2014년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재산임대수입(6억2천9백만원)’과 ‘사용료수입(12억2천6백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률 (%)	산출기초
계	2,374,386	4,358,360	1,983,974	83.6	
경상적세외수입	858,416	1,884,979	1,026,563	119.6	
재산임대수입	270,278	629,539	359,261	132.9	
공유재산임대료	270,278	629,539	359,261	132.9	-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 청년청 사용료
사용료수입	579,038	1,226,800	647,762	111.9	
기타사용료	579,038	1,226,800	647,762	111.9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 청년청 관리비
사업수입	9,100	20,640	11,540	126.8	
기타사업수입	9,100	20,640	11,540	126.8	- 마포마을활력소 상가 임대수입
이자수입	0	8,000	8,000	-	
기타이자수입	0	8,000	8,000	-	- 시비보조금 - 이자 반납 수입

- 2018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결산전망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8억5천8백만원) 대비 102.5% 증가한 17억3천8백만원으로, 이는 과학적인 세수추계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세입예산 편성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2019년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 서울혁신기획관은 세수추계 및 결산 전망 등을 반영한 적정 세입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도 세외수입 등 결산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산전망
세외 수입	2,274,386	2,751,511	2,090,934	3,189,228
경상적세외수입	858,416	859,023	843,503	1,738,789
공유재산임대료 등	858,416	859,023	843,503	1,738,789
임시적세외수입	1,415,970	1,892,488	1,247,431	1,450,439
시유재산변상금	111,670	64,787	64,787	120,928
기타잡수입 등	1,304,300	1,827,701	1,182,644	1,329,511

-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에는 다양한 임대공간이 있는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임대공간 사용료, 대관료 등 수익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청년허브, NPO지원센터, 무중력 지대 G밸리, 청년교류공간 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제15조)¹⁾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34조)상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세입조치 및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법령 위배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기관의 수입 내역>

1. NPO지원센터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64,335,000	50,750,000	99,665,000
대관료	50,343,000	50,395,000	39,452,000
기타수입	13,742,000	0	60,000,000
이자수입	250,000	355,000	213,000

2.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수입 상세 내역>

(단위: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2,957,451	3,319,113	1,854,817	
사업수입				
창문카페 임대료	2,957,451	3,319,113	1,854,817	서울혁신센터 재산평가액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2조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9,458,655	25,116,474	15,668,662	
관리비	6,441,155	4,980,474	1,552,662	입주단체, 창문카페
수업료	1,900,000	680,000	-	청년학교
대관료	21,117,500	19,456,000	14,116,000	다목적홀, 세미나실, 창문카페
기타 수입 등				

○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 관 리 비 : 청년 공유공간 운영자 현장교육 및 소셜다이닝 진행
- 대 관 료 : 다목적홀 무대장비 및 장애편의시설 설치, 세미나실, 창문카페 등 시설보완

○ 세입근거

- 서울시 사업계획 승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징수 등)
-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0조(수입금의 징수·처리)

3. 청년청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수입 상세 내역〉

(단위: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55,248,140	95,561,630	91,593,000	
사용료	55,248,140	59,098,430	45,625,000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계획 (청년정책담당관-11188, 2015.12.4.) 청년청 자립실험실 공간지원 추진계획 승인(청년정책담당관-6860, 2018.6.20.)
관리비	0	36,463,200	45,968,000	'18년 청년활동공간 창경입주단체 계약계획 (청년정책담당관-4376호, 2018.4.23.)

4. 무중력지대 G밸리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무중력지대 G밸리	16,696,000	24,154,904	20,005,811	
대관비(공간)	11,803,000	16,213,239	15,391,151	회의실 및 전체 공간 대관, 부가세
수익금(카페, 복합기 등)	4,478,000	4,754,420	2,981,460	커피 및 다과 판매, 복합기 이용료
프로그램 참가비	415,000	3,187,245	1,633,200	프로그램 참가 비용

* 2018년 상반기 결의 완료 내역 기준

○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 자체결의 후 세입처리

○ 세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수입금의 징수, 처분)

5. 무중력지대 대방동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무중력지대 대방동	13,299,110	5,650,290	7,481,092	
수익금	669,400	267,300	284,310	커피, 오락기 이용료
대관료	5,662,750	2,677,690	1,910,554	회의실 등 공간 대관
대여비(사물함)	319,000	187,000	-	이용자 사물함 대여
관리비(입주단체)	6,000,000	2,500,000	3,630,000	입주단체 관리비
참가비(교육, 강연 등)	617,000	-	1,606,000	프로그램 참여자 회비
기타	20,960	18,300	50,228	이자

○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 자체처리 후 세입결의

○ 세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징수 등)
- 서울특별시 무중력지대 대방동 위·수탁협약서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6. 무중력지대 양천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무중력지대 양천			5,305,688	
대관비(공간)			4,313,688	3개 대관시설
수익금(카페)			576,000	카페 커피머신기
수익금(복합기 이용료)			416,000	복사카드 판매

○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 자체결의 후 세입처리

○ 세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별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수입금의 징수, 처리)

7. 무중력지대 도봉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원)

구 분	2016	2017	2018	비 고
무중력지대 도봉	-	-	2,483,183	
OA이용료(현금결제)	-	-	98,000	복사 및 출력, 프린트
커피이용료(현금결제)	-	-	96,000	1잔 1,500원
공간사용료(계좌이체)	-	-	1,497,000	라운지 50천원, 세미나실 20천원, 회의실 10천원 (2시간기준)
입주임대료(계좌이체)	-	-	792,000	월 66,000원(3개단체 입주)
기타	-	-	183	결산이자

○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 자체결의 후 세입처리

○ 세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수입금의 징수, 처리)

8. 무중력지대 성북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무중력지대 성북	-	-	2,856,505	
대관료	-	-	894,375	
참가비(교육, 강연 등)	-	-	1,961,770	
기타	-	-	360	이자

○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 자체처리 후 세입결의

○ 세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징수 등)

- 서울특별시 무중력지대 성북 위·수탁협약서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9. 무중력지대 서대문

〈최근 1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무중력지대 서대문			2,548,760	
대관비			1,767,500	행정(세미나), 오로라(홀), 지구(공유주방) 등
참가비(강연)			712,500	청년 도담도담 클래스
수익금(커피쿠폰)			65,000	공유주방 내 커피머신
수익금(OA)			3,550	인쇄요청
기타(이자)			210	

○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 자체결의 후 세입처리

○ 세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 서울특별시 무중력지대 서대문 위·수탁 협의서 제10조(수입금의 징수, 처리)

10. 청년교류공간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청년교류공간	해당없음	해당없음	6,484,568	
대관수입			6,173,379	1~4층 대관수입
카페수입			71,400	커피머신 사용료
오락기 수입			48,300	오락기 사용료
OA 수입			109,700	복합기 사용 용지
이자수입			51,789	이자수입 외
사업 참가비			30,000	청년교류공간 프로그램 참여자 회비

○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 처리 현황

- 자체처리 후 세입결의

○ **세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징수 등)
- 지방재정법 제 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11. 서울혁신센터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수입 상세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10.31)
임대수입	596,961,994	51,103,139	315,664,548	230,194,307
관리비 수입	1,098,100,857	157,090,620	550,260,000	390,750,237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10.31.)	비 고
계	1,744,048,527	209,315,598	881,855,925	652,877,004	-
임대료 수입	596,961,994	51,103,139	315,664,548	230,194,307	세외수입 처리
관리비 수입	1,098,100,857	157,090,620	550,260,000	390,750,237	
이용료 수입	48,985,676	1,121,839	15,931,377	31,932,460	자체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은 1억 2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혁신파크 20동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는 2019년도에도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변상금(1억2천3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등은 서울 혁신파크의 원활한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변상금만을 매년 세입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이전 촉구 및 법적 대응 등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이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파크 무단 점거 단체 현황 〉

구 분	강북근로자복지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계약기간	'11.12.25~'14.12.24	'11.8.1~'14.7.31	'16.7.1~'17.12.31
연 면 적	지상3층(1857.15㎡)	지상3층(1,142.1㎡)	78.75㎡
사 용 료	면 제	(변상금 : 월 10,101천원)	(변상금 : 월 1,194천원)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서부수도사업소 마포민원센터 부지로 이전을 하기 위하여 양측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년도 세입**

- 최근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징수 현황을 보면, 매년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지난년도 세입'을 편성하지 않다가 2018년도부터 세입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지난년도 세입(6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중 10월 말 기준 153건에 5억 3백만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미수납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2018년 10월 말 기준, 단위 : 건, 천원)

년도	구분	계	금액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500만원이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2014	건수	7	2	2	1	1	1	-
	금액	41,818	14	333	1,553	8,880	31,038	-
2015	건수	17	11	-	2	-	-	4
	금액	533,907	167	-	4,934	-	-	528,806
2016	건수	48	26	21	1	-	-	-
	금액	9,822	1,351	5,775	2,696	-	-	-
2017	건수	20	8	3	8	-	1	-
	금액	52,284	33	1,066	15,185	-	36,000	-
2018	건수	153	58	44	24	13	14	0
	금액	532,432	1,956	13,970	63,636	94,084	358,786	0

- 특히, 서울혁신센터와 청년청에 입주한 단체들의 임대료, 사용료 체납금 및 이미 퇴거 했으나, 체납된 사용료를 미납한 단체들의 미납금이 조속히 납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청〉

- 3개월 이상 체납단체 : 소셜씨어터외 1건(1,386천원)
- 6개월 이상 체납단체 쌍방외 1건(2,612천원)
- 퇴거했으나, 사용료 미납단체 3건(402천원)
 - 단체명: 행복한운동장, 퇴거일: 2018.2.28., 미납액: 92천원
 - 단체명: Just Project, 퇴거일: 2018.2.28., 미납액: 125천원
 - 단체명: 프로젝트 위기, 퇴거일: 2018.1.31., 미납액: 185천원

〈서울혁신센터〉

- 3개월 이상 체납단체 : 고구마교육음악연구소 등 2건(3,556천원)
- 6개월 이상 체납단체 : 해당없음.
- 퇴거했으나, 사용료 미납단체 6건(16,339천원)

단체명	퇴거일	미납액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	2017-02-28	2,930,130
공익마케팅스쿨	2017-10-13	1,018,090
랩정다방프로젝트	2017-09-15	8,437,420
생활건강자립연구소(준)	2017-04-30	33,000
큐토리얼랩서울	2018-05-31	66,000
로티프로젝트	2018-10-31	3,854,410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징수 현황〉

(단위:천원)

- 2016년

구 분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월액
세외 수입	1,607,510	1,471,443	1,355,663	115,780
경상적세외수입	1,501,764	560,085	546,276	13,809
공유재산임대료 등	1,501,764	560,085	546,276	13,809
임시적세외수입	105,746	911,358	809,387	101,971
시유재산변상금	105,746	116,190	108,365	7,826
기타잡수입 등	-	795,168	701,022	94,145

- 2017년

구 분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징수액	이월액
세외 수입	645,746	2,221,152	2,118,429	102,723
경상적세외수입	540,000	702,944	700,805	2,139
공유재산임대료 등	540,000	702,944	700,805	2,139
임시적세외수입	105,746	1,518,208	1,417,624	100,584
시유재산변상금	105,746	126,413	115,923	10,490
기타잡수입 등	-	1,391,795	1,301,701	90,094

-2018년

구 분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산전망
세외 수입	2,274,386	2,751,511	2,090,934	3,189,228
경상적세외수입	858,416	859,023	843,503	1,738,789
공유재산임대료 등	858,416	859,023	843,503	1,738,789
임시적세외수입	1,415,970	1,892,488	1,247,431	1,450,439
시유재산변상금	111,670	64,787	64,787	120,928
기타잡수입 등	1,304,300	1,827,701	1,182,644	1,329,511

2. 세출예산 검토

가.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신규)

- 동 사업은 상호 신뢰와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서울형 민관협력제도의 사회협약”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회협약 온라인 공론장 운영 및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345,000	345,000	0
사무관리비	0	0	345,000	345,000	0

〈세부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협약 체결을 위한 공론과정 = 100,000천원
		- 사회협약 포럼 운영 5,000,000원*10식 = 50,000천원
		- 사회협약 선포대회 30,000,000원*1식 = 30,000천원
		- 사회협약 온라인 공론장 운영 20,000,000원*1식 = 20,000천원
		○ (민,관)협약 추진기구 운영 = 145,000천원
		-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운영 = 33,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20명*10회 = 30,000천원
		▷ 회의운영비 300,000원*10회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 3,000천원
		- 협약추진기구 사무운영 = 102,000천원
		▷ 민간 추진기구 운영 102,000,000원*1식 = 102,000천원
		- 워크숍 및 자문회의운영 = 10,000천원
		▷ 사회협약워크숍 5,000,000원*1식 = 5,000천원
		▷ 민간전문가자문회의(회의수당, 운영비) 1,000,000원*5회 = 5,000천원
		○ 협약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사업 100,000,000원*1식 = 100,000천원
		증감사유

- 동 사업은 사업의 구체성 및 상위법이나 조례상 사회협약의 근거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동 사업의 사회협약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 둘째, 행정권한은 ‘법정주의’를 따르므로 사회협약을 통한 민관협력은 법령상의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 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셋째,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운영(2천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과 조례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하나, 근거가 미흡하며, 동 위원회 운영의 세부 산출기초도 부실한 상황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간 추진기구 운영”은 민간위탁사업인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지 등 그 성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넷째, 서울혁신기획관은 10월에 사회협약 선포식을 진행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협약 이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나, “협약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사업”의 예산편성액(1억원)이 과도하고, 집행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섯째, 협약이행 옴부즈만의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별도의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 다른 사업과 달리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109쪽)에는 향후 정책 기대효과가 제시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근거 미흡 및 명확한 사업계획이 미비한 측면(방침서 결재 2018년 11월 16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서울사회협약 추진체계〉



□ 추진내용

○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운영(협약 체결 후 사회협약추진위원회로 전환)

- 구성: 분야별 민간 대표, 행정, 시의회 등 15명 내외

※ NPO,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도시재생, 복지, 여성, 문화 등

- 역할: 사회협약 절차 및 사회협약 대상과제 현황 진단, 개선방향 검토
 사회협약 초안 구성, 공론화과정(정책포럼) 운영 등
 사회협약추진위원회로 전환이후 협약 확산 및 이행 과정 점검, 평가
 ※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협력
- 사회협약 구성안

- i)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의 공동 가치,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ii) 협정서가 포함하고 있는 주요 제도의 범위와 내용
- iii) ii)에 따른 행정과 민간의 관계·역할, 권한·책임 등에 관한 사항
- iv) 협약의 이행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사항

나.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신규)

- 동 사업은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대출 및 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5억 8천만원의 ‘이차보전금’ 등을 편성하려는 것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660,000	660,000	0
사무관리비	0	0	80,000	80,000	0
이차보전금	0	0	580,000	580,000	0

- 동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금융대출 지원 및 이차지원을 하려는 것인바, 업무협약 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12.
-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 수행주체 : 서울시,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및 보증보험기관 등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금융대출 지원 및 이차지원
- 추진내용 : 협약 체결, 계획 및 방침 수립, 대상자 선정, 대출금 지원 및 이차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천만원까지 최대 10년 후 상환 장기저리 대출 이차 지원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결없이 자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신규)

- 동 사업은 청년세대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청년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청년의회 및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현장성 높은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7억 8천 5백만원(사무관리비)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785,000	785,000	0
사무관리비	0	0	785,000	785,000	0

※ 동 사업은 청년 허브에서 수행했으나, 서울시에서 청년청(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 직접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4% 증가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주요사업	비고
2018	450	청년의회·청년주간 행사,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청년허브)
2017	354	청정넷 구성 및 운영, 기획 프로젝트 실행, 청년의회 (※ 청년주간 130백만원 포함)	민간위탁금(청년허브)
2016	350	오지라퍼 모집 및 구성, 시정참여교육, 팀별 일상모임 실행 (※ 청년주간 150백만원 포함)	민간위탁금(청년허브)
2015	195	팀별프로젝트, 대학생기자단, 홈페이지 운영(민간경상보조) 타운홀미팅, 청년주간(사무관리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민달팽이유니온) 제한경쟁입찰 대행사 선정 (사)공공네트워크

- 주요 사업 내용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2억7천3백만원), “서울청년의회 및 공론장 운영”(2억8천만원), “서울청년주간 운영”(1억7천만원) 등임.

〈세부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27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멤버 모집 및 구성, 멤버십캠프 등(500명 규모) = 50,000천원 ▷ 멤버십캠프 운영 (자료집제작, 진행비 등 1박2일) 18,500,000*1식 = 18,500천원 ▷ 멤버십캠프 식비 8,000*500명*4식 = 16,000천원 ▷ 모집설명회 운영(다과비 등) 3,000*500명*3회 = 4,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대관(숙박비 포함) 20,000*500명 = 10,000천원 ▷ 강사비,발제비 200,000*5명 = 1,000천원 - 정책아카데미 운영 2,000,000*20회 = 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비 200,000*2명*20회 = 8,000천원 · 장소대관료 500,000*20회 = 10,000천원 · 자료집제작 6,000*100부*20회 = 12,000천원 · 아카데미 운영비 500,000*20회 = 10,000천원 - 분과별 회의 운영 100,000*40개분과*5회 = 20,000천원 - 팀별 프로젝트 운영 1,000,000*40개분과 = 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모니터링비(설문조사 등) 500,000*40개분과 = 20,000천원 · 프로젝트 활동비(기획전시 등) 500,000*40개분과 = 20,000천원 - 정책컨설팅 및 조사연구 37,500,000*2회 = 75,00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원단 운영(파실리테이터) 150,000*40개분과*8회 = 48,000천원 ○ 서울청년의회 및 공론장 운영 = 280,000천원 - 서울청년의회 운영 20,000,000*4회 = 80,000천원 ▷ 청년의원 위촉식(위촉파티,정책강연 등) 4,000,000 = 4,000천원 ▷ 청년의회 본회의(기획비,진행비 등) 7,000,000*4회 = 28,000천원 ▷ 홍보비(자료집제작, 홍보영상 등) 7,000,000*4회 = 28,000천원 ▷ 서울청년의회 캠페인 (부스운영, 리플렛제작 등) 4,000,000*4회 = 16,000천원 ▷ 공간대관비(시의회 2회 사용예정) 2,000,000*2회 = 4,000천원 - 청년자율예산제 편성(500억) 대시민 의견수렴 100,000,000*1식 = 100,000천원 ▷ 청년자율예산 공청회 1,000,000*25개 자치구 = 25,000천원 ▷ 전문가 자문비 100,000*10명*10회 = 10,000천원 ▷ 청년자율예산제 설계 컨설팅 15,000,000*1회 = 15,000천원 ▷ '20년 사업 선정과정 제안사업 3단계 숙의과정(용역) 50,000,000원*1식 = 50,000천원 - 정책간담회 및 공론장(포럼) 운영 5,000,000*10회 = 50,000천원 · 발제비 200,000*10명*10회 = 20,000천원 · 장소대관료 1,000,000*10회 = 10,000천원 · 자료집제작 15,000*100부*10회 = 15,00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운영비 500,000*10회 = 5,000천원 - 지역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회 등 10,000,000*5회 = 50,000천원 · 장소대관료 2,000,000*5회 = 10,000천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등) 200,000*10명*5회 = 10,000천원 · 자료집제작 10,000*300명*5회 = 15,000천원 · 교류회 운영비(간담회비 등) 3,000,000*5회 = 15,000천원 ○ 서울청년주간 운영 = 170,000천원 - 전문인력용역비 50,000,000*1식 = 50,000천원 - 기획운영비(식비 포함) 10,000,000*1식 = 10,000천원 - 전국활동가 교류회 10,000,000*1식 = 10,000천원 - 시민대토론회 개최 20,000,000*1식 = 20,000천원 - 청년활동 박람회 운영 20,000,000*1식 = 20,000천원 - 청년문화활동 지원 20,000,000*1식 = 20,000천원 - 홍보비 30,000,000*1식 = 30,000천원 · 행사 홍보영상 4,000,000*2회 = 8,000천원 · 자료집제작(시민대토론회 등) 20,000*1000부 = 20,000천원 · 홍보물제작(포스터, 리플렛 등) 2,000,000*1회 = 2,000천원 - 물품구매(티셔츠 제작 등) 10,000,000*1식 = 10,000천원 ○ 홍보비 = 50,00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홍보물 제작(홈페이지 운영 등) 5,000,000*2회 = 10,000천원 - 대시민 홍보 영상 제작(청년정책홍보) 5,000,000*2건 = 10,000천원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10,000×1,000부*2회 = 20,000천원 - 성과보고서 제작 20,000*500부 = 10,000천원 ○ 운영비(물품구매 등) 1,000,000*12개월 = 12,000천원
	증감사유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사업 중 “멤버십 캠프 운영” 사업에 식비(1천6백만원), 다과비(4백50만원)를 편성하고 있는바, 동 예산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동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201 일반운영비	사 무 관 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재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 공 운 영 비	·공공요금 및 제세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또한, “서울청년주간 운영” 사업을 살펴보면 “전국활동가 교류회” 1천만원(1식), “기획운영비(식비 포함)” 1천만원(1식), “전문인력용역비” 5천만원(1식), “시민대토론회 개최” 2천만원(1식), “청년활동 박람회 운영” 2천만원(1식), “청년문화활동 지원” 2천만원(1식)으로 편성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저해하고 적정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서울시 청년사업이 청정넷 참여자 및 소수 활동가 중심의 참여와 사업 등 특정 소수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활동 청년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아울러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청정넷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모집한 청년들의 모임 및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한 정책 제시 및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의 근거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또한,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고 소속 위원들은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청정넷 회원과 청정넷 사무국 직원이 서울시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서약서 양식〉

위원 위촉 서약서 (표준안)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라.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DB 구축(신규)

- 동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인력 풀 DB를 구축·관리 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 위원회에 청년위원 선정(15%)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160,000	160,000	0
사무관리비	0	0	100,000	100,000	0
행사운영비	0	0	20,000	20,000	0
전산개발비	0	0	40,000	40,000	0

- 동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청년 미래 인재풀을 구성*하고자 하는바, 청년 인재풀 DB 구축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어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참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청년 인재 DB 구축시 홍보활성화, 1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공개 모집 등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 미래 인재풀 구성 계획>

- 서울시 위원회별로 적합한 청년위원 사전 의견수렴(전문지식, 활동영역 등)
- 자격요건 : 청년 연령(19~34세)의 건축, 복지, 경제, 문화, 일자리 등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
※ 청년 연령 범위 검토 후 확정
- 모집방법 : 온.오프라인 공개모집, 관련분야 추천 등
- 구성방법 : 자격을 갖춘 인재 중 별도 심사과정을 통과한 청년

※ 청년인재발굴 전담팀 신설(2019.1.17.)예정

- 또한,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195개(위원수 4,903명) 있는바, 그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청년 인재풀 구축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위원회에도 청년 인재를 추천하고자 하고 있으나, 산하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사업 범위 조율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서울시 소관 위원회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수 (단위 : 개)	185	194	195
위원수 (단위 : 명)	3,911	4,667	4,903
운영수당 (단위:백만원)	2,199	2,268	1,599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마.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신규)

- 동 사업은 권역단위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 NPO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조성되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

〈편성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0	0	250,000	250,000	0
사무관리비	0	0	150,000	150,000	0
공공운영비	0	0	100,000	100,000	0

〈서울시 NPO지원센터 현황〉

시설명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서울시 NPO지원센터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심의기구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사업범위	서울 동북권 5자치구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서울시 전역
사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권역 비영리단체·활동가 역량강화 · 동북권역 내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 · 권역 단위 공익활동 의제 발굴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단위 NPO 지원 총괄 · NPO역량강화, 지속가능성 지원 · 공익활동 기반조성 및 제도·정책 발굴 · NPO 정책역량 강화 등
위치	임시공간	정식개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 (서울시 행정재산)
	서울시 도봉구 노회로 69길 21 (창동) 두승빌딩 2층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2층(2020년 6월 준공예정)	
규모	전용 200㎡	전용 400㎡	전용 868㎡
주요시설	·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기록자료실, 사무실 등		· 다목적강당,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인력	· 5명 - 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3 (사업담당2, 총무·회계·시설관리1)		· 15명 - 센터장1, 실장2, 직원12 (사업담당10, 운영1, 회계1)
소요예산	4억 7천 3백만원('18년도)		19억 4천만원('18년도)
민간위탁	2018년 6월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2013년 11월(사단법인 : 시민)

- 동 사업은 민선7기 시장공약에 따라 권역별로 NPO 활동 거점 공간 및 지원 센터를 확대하려는 것이나, 기존의 NPO 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달리 공간을 조성한 후 임시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운영할 계획에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직영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 관련 사전 절차 준비 미흡, 적정 입지 공간 미선정 등의 사유를 들고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을 통해 권역단위의 시민공익활동과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추진 근거, 지역 형평성, 준비 미흡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서울시 전역의 NPO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 및 운영방식(2019년 조성 이후 직영하였다가 2020년 민간위탁 예정) 등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추가적인 NPO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둘째, 2013년에 위탁한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2018년에 위탁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관계 정립과 역할 문제 등 업무 영역의 명확한 분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권역별 NPO지원센터 조성은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고,
- 셋째, 광역자치제와 구자치제를 시행하는 현 시점에서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설립”은 지방자치제도와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이미 금천구와 노원구에서는 자치구 NPO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센터 조성은 “구”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넷째, 서울시에는 시민사회, 공유경제, 청년문제 등 사회혁신활동 수행 단체를 지원하는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청년청”, “청년허브”, “여성 NGO 지원센터”²⁾ 등 NPO 등을 지원하는 유사 민간

위탁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인바, 모든 권역에 NPO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섯째, 서울혁신기획관은 추가적인 NPO지원센터의 조성 근거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9조는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에 대한 추진 근거이며, 권역 별로 NPO지원센터를 추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명확한 근거 필요성과 함께 추가적인 NPO 지원센터도 2020년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바, 명확한 근거 마련에 대해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2) 2017년 3월, 동 센터는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현재, 동 센터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로 변경함.
 - 주요 미션은 “다양한 성평등 활동과 여성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성장 지원”임.
<http://seoulgenderequity.kr/load.asp?subPage=110#vision>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

- 동 사업은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현하며,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서울혁신파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80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전년 예산 88억8천 5백만원 대비 8.8%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8,885,737	8,885,737	8,098,275	△787,462	△8.8
사무관리비	150,000	150,000	220,000	70,000	46.6
민간 경상사업보조	400,000	400,000	0	△400,000	△100.0
민간위탁금	7,535,737	7,535,737	7,878,275	342,538	4.5
국제부담금	200,000	200,000	0	△200,000	△100.0
민간위탁사업비	600,000	600,000	0	△600,000	△100.0

< 세부 산출 기초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법률자문 등 = 50,000천원	○ 서울혁신파크 운영 자문 = 20,000천원
	○ 서울혁신파크 홍보 -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100,000천원×1회 = 100,000천원	○ 서울혁신파크 홍보 -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100,000천원×2회 = 200,000천원
	증감사유	
	○ 서울혁신파크 운영 자문 비용 감액 및 홍보비 증액	

- 2018년 동 사업 중 ‘사무관리비’ 집행 실적(10월 30일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법률자문” 등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혁신파크 수탁자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등에 188만원을 집행하였고, “서울혁신파크 홍보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였음.
-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서울혁신파크 운영 자문”은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동위원회는 조례상 한시적 운영을 마치고 현재 폐지된 바, 서울혁신파크 운영 자문 사무관리비 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	과목구분	세부산출기초	예산액
2015년	사무관리비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 2,000천원*6회	12,000천원
2016년	사무관리비	서울혁신파크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1,350천원*6회	8,100천원
2017년	사무관리비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법률자문 등	50,000천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은평구민들조차도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비 전액을 미집행하고 있는 것은 불성실한 예산 집행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적정 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사업의 2019년도 사무관리비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자문” 2천만원, “서울혁신파크 홍보비” 2억원을 편성(2억2천만원)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사업 중 ‘민간위탁금(서울혁신센터)’의 경우는 2018년(75억 3천 5백만원) 대비 4.5%(3억 4천 2백만원) 증액한 78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7,535,737	7,878,275	342,538	4.5%	
민간위탁금	소 계	7,535,737	7,878,275	342,538	4.5%
	인 건 비	1,249,441	1,295,530	46,089	3.7%
	운 영 비	398,341	439,498	41,157	10.3%
	사 업 비	2,356,000	2,426,105	70,105	3.0%
	시설관리비	3,531,955	3,717,142	185,187	5.2%

- 서울혁신센터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공간 활성화(2억8천4백만원)”, “글로벌 혁신협력(2억2천1백만원)”, “비전화공방 운영(6억4천만원)”, “대표 전략프로젝트 운영(7억3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2015년 개소한 서울혁신센터의 사업 중 뚜렷한 성과 없이 2017년도에 폐지된 사업(리빙랩, 사회혁신리서치랩)이 많았으며, 2019회계연도에는 사업명을 새롭게 변경하였으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구별 등 기초 자료 제출 미흡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제출 등은 서울혁신센터의

정체성 미확립 및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인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및 목적 사업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명확한 산출 기초에 따라 편성하고 협약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바, 관련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당초 부실한 산출기초나, 협약서상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사업비 집행 실적 저조 (2017년 결산 기준 82.7% , 2018년 9월말 기준 62.7%)와 공모 사업 과도 및 선발의 불공정성(비전화공방 공모 사업 응모자 모두 선정), 2천만원 이상 거의 모든 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입주단체 체납료 과도, 불법 점거 단체(강북 근로자복지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미이전 등 사업 운영의 불투명성과 불성실한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또한, 2018년 4월 한국 마이크로 크래딧 신나는 조합과 혁신플랫폼 협동조합(컨소시엄)에서 새로 수탁하여 여전히 센터장이 공석인 상태인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금 산정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혁신파크 1단계 공사이후 조성한 연수동은 서울혁신센터에서 타 기관(로컬스티치, 2018.4.1.~2018.12.31. 2억2천만원)에 용역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사업 전체를 위탁 하는 것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재위탁으로 보여질 소지가 큰바, 연수동 운영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서울혁신센터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연수동 운영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공실률이 과도한바, 연수동이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용역 사업으로 위탁할 경우 운영자 미 선정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되는바, 직접 수행 등 서울혁신센터의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불공정한 사무처리.비용 등의 부당징수 불가
- 위탁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등 사용불가
- 관계법령.조례.협약사항 준수, 시장의 명령.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 위탁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시설 신축 時, 사전 시장 승인 필요
 - 승인 時, 동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음
- ※ 수탁사무 운영을 위한 물품 등 구매시 재래시장.소형마트 등 이용
-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할 수 없음. 다만,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에 한해서는 가능
- 한편, 수탁기관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용역계약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7에 따라 판단하여 제3자 재위탁이 아닌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별첨 7〉

① 생략

② 해당업무가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과정이 아닌지

- 해당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용역으로 전환하거나, 사무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볼 수 있다.

☞ 용역 : 단순 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서울혁신파크 연수동 운영현황〉

□ 연수동 개요

- 위치 지: 서울혁신파크 1단지내(리모델링)
- 규모 : 1,203^{m²}
- 용도 : 혁신활동가 연수 및 숙박시설
- 구성 : 총 21개 객실
 - 1인실 4, 2인실 14, 4인실 2, 10인실 1



□ 연수동 운영현황

○ 이용현황

월별	객실이용인원	객실점유율
5월	44명	12.9%
6월	162명	20%
7월	266명	31.5%
8월	324명	40.7%
9월	152명	28%

○ 자체 기획프로그램 운영

- 8월 : 취미네 민박(취미활동과 숙박 결합 프로그램)
- 9월 : 개인주의자들의 도시캠핑(1인 주거 대상 추석연휴 이벤트)

〈2019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단위: 백만원)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7,535	7,535	7,878	343	4.6%
민간위탁금	7,535	7,535	7,878	343	4.6%
인 건 비	1,249	1,249	1,296	47	3.8%
운 영 비	398	398	439	41	10.3%
시설관리비	3,532	3,532	3,717	185	5.2%
사 업 비	2,356	2,356	2,426	70	3.0%
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114	114	-	△114	
홍보 및 대외협력	95	95	138	43	45.3%
중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300	300	-	△300	
야외공간 활성화	95	95	-	△95	
해외혁신기관 공동사업	400	400	-	△400	
1단계 조성공간 운영	700	700	-	△700	
비전화공방 서울	652	652	640	-12	-1.8%
입주단체 유치 및 커뮤니티 지원			83	83	
대표 전략프로젝트 운영			730	730	
공간 활성화			284	284	
글로벌 혁신협력			221	221	
사회혁신 연수시설 운영			330	330	

사.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 동 사업은 서울혁신파크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신·증축과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완료 이후 혁신파크 미래청 외벽 리모델링 공사, 내진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31억 8천 5백만원 (전년 예산 47억7백만원 대비 32.3%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4,707,200	4,707,200	3,185,200	△1,522,000	△32.3
시설비	4,635,600	4,635,600	3,130,200	△1,505,400	△32.4
감리비	56,600	56,600	45,000	△11,600	△20.4
시설부대비	15,000	15,000	10,000	△5,000	△33.3

※ 서울혁신파크 조성은 (구)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혁신창출공간(업무시설, 혁신단체입주공간 등), 시민상생공간(농촌체험, 아케이드 등), 온세대 혁신공간(어린복합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과 관련한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천7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예산현액(90억원) 대비 집행률은 48.0%(43억원)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천원)

변경 구분	예산 과 목		당초 예산액	금액		최종 예산액	10월말 현재 집행액	승인 일자	사유
	세부	통계목		감	증				
변경 사용	서울 혁신	시설비	4,635,600	77,340		9,039,880*	4,399,826	2018. 02.20.	서울혁신파크 조성과정에서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일부에서 감리비로 변경
	파크 조성 사업	감리비	56,600		77,340	314,176	257,576		

* 1단계 조성공사 이월예산 : 4,404,956천원 포함.

〈최근 3년간 서울혁신파크 조성 진행 상황, 예산액, 집행액, 계획대비 진행률〉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계획대비 진행률	
2015년	4,8동 리모델링 공사		278	260	공사완료	
	보안설비 개선공사		623	623		
	담장개방 녹화사업		154	115		
	1동 전력설비 정비공사		917	18	이월 860	
	중소규모 건축물 개보수공사		4,938	134	이월 4,384	
	22동 청년청 조성공사		346	31	이월 275	
	1단계 조성사업 현상설계 공모		1,206	101	이월 1,105	
	총 계		8,462	1,282		
2016년	사고 이월	1동 전력설비 정비공사 완료	860	834	공사완료	
		22동 청년청 조성공사 완료	275	260		
	명시 이월	중소규모 건축물 개보수공사 완료	4,384	4,260		
		1단계 조성사업 설계	1,105	1,050		
	이월 예산 소계		6,624	6,404		
	1단계 조성사업 공사(착공)		11,355	26		이월 11,324
	총 계		17,979	6,430		
2017년	이월	1단계 조성사업 공사	11,324	11,056	공사완료	
	이월 예산 소계		11,324	11,056		
	1단계 조성사업 공사		17,038	11,522	이월 4,682	
	총 계		28,362	22,578		
'18년 (18.9.30 현재)	이월	1단계 조성사업 공사	4,682	4,603	98.3%	
	이월예산 소계		4,682	4,603	사용중	
	혁신파크 단지조성 및 내진보강 등		4,707	4	19.6 완료예정	
	총 계		9,389	4,607	이월예정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18년 내진 보강 사업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8년 내진 설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은 0.1%로 극히 저조하고, 2018회계연도 내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로, 안전도시 서울을 표방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무색하게 하였는바, 이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사업 집행 행태라고 하겠음.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중 내진보강 상세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계획
총 계	2,032	4	
시설비 (공사비,설계비)	1,960	2	'18.12월 집행예정 설계비 78백만원 '19.6월 집행예정 공사비1880백만원
감리비	57	-	
시설부대비	15	2	자문비

- 더불어 서울혁신파크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발주 등의 사업예산 47억 7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세부사업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천원)	이월액 (천원)	이월사유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비 이월 발생)	4,707,200	4,482,343	-2018.7~8월설계공모로설계자선정 -2018.9~12월설계용역기간 ⇒ 서울혁신파크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발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므로 불가피하여 예산이월이 필요함

- 서울혁신기획관은 여러 단체 및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혁신파크의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동 사업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 사회혁신 생태계 운영 사업

- 동 사업은 창의적 행정혁신 사례 및 우수한 민간의 사회혁신 사례 발굴 과 공유를 통해 사회혁신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12억 5천 6백만원 (전년 예산 87억5천8백만원 대비 28.6.%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875,893	1,005,893	1,256,490	250,597	28.6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x-) 26,683	(x-) 26,683	(x-) 27,590	(x-) 907	(x-) 3.4
사무관리비	(x-) 398,810	(x-) 528,810	(x-) 208,700	(x-) △320,110	(x-) △80.2
행사운영비	(x-) 0	(x-) 0	(x-) 160,000	(x-) 160,000	(x-) 0
국외업무여비	(x-) 30,000	(x-) 30,000	(x-) 50,000	(x-) 20,000	(x-) 66.7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24,200	(x-) 24,200	(x-) 24,200	(x-) 0	(x-) 0
특정업무경비	(x-) 70,200	(x-) 70,200	(x-) 69,000	(x-) △1,200	(x-) △1.7
외빈초청여비	(x-) 30,000	(x-) 30,000	(x-) 30,000	(x-) 0	(x-) 0
기타보상금	(x-) 67,000	(x-) 67,000	(x-) 67,000	(x-) 0	(x-) 0
포상금	(x-) 229,000	(x-) 229,000	(x-) 220,000	(x-) △9,000	(x-) △3.9
민간경상사업 보조	(x-) 0	(x-) 0	(x-) 400,000	(x-) 400,000	(x-) 0

- 동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은 2018년도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에서 편성했던 것을 2019년도부터는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서울혁신센터(민간위탁) 위탁시부터 센터의 고유 사무로 수행하였으나,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직접 수행 하고 있음.

○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 사업내용 : 사회혁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 소요예산 : 400,000천원

리빙랩(Living Lab)

- 우리말로 '생활 실험실'이란 뜻. 시민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개방적 혁신 실험을 위한 공공-민간(자본)-시민의협력체계(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
- 동네 골목의 쓰레기난과 주차난에서부터, 도를 넘은 학교 안의 폭력과 따돌림,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피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모든 문제가 실험 대상이며, 주택가 골목, 아파트 단지, 재래시장, 학교 교실, 회사의 생산현장, 종합병원 입원병동,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든 삶의 현장이 리빙랩의 실험실임

<일상생활 실험을 지원하는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 추진 목적

- 새로운 사회혁신 모델인 리빙랩의 개념과 취지를 살려 서울의 각종 난제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 속 사회혁신 실험을 지원함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0조(보조대상) ~ 제18조(운영세칙)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추진 개요

- 사업명 : 「2018년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 사업기간 : '18. 6월 ~ 11월
- 응모자격 : 서울 혁신파크내 입주단체 및 입주단체와의 컨소시엄
- 주요내용
 - 시민체감형 일상 프로젝트 설계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 사회혁신 실험
 - 시민주도 문제 발굴, 실생활 세팅, 다양한 이해관계 공조, 적극적 해결책 모색
 - ▶ 공모 프로젝트 10~15개, 1개 프로젝트당 1~3천만원 미만 지원
- 추진방법: 콘텐츠 및 사업자 공모
 - 기획·발굴 → 콘텐츠 및 사업자 선정 → 프로젝트 실험 → 결과 확산

2018년 리빙랩 주제선정
사업 계획

⇒

예비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공모 및 참여팀 선정
사회혁신 리빙랩 역량교육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예산현황: 총 4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8년 신규사업)

□ 선정 절차

[주관부서 심사]

- 일시/장소: '18. 5.23.(수) 15시~18시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 심의대상: 총 28개 응모 프로젝트
- 심사방법: 제출서류(제안서)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18. 5.31.(목) 14~22시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 심의대상: 총 28개 응모 프로젝트
- 심의방법: 서류 및 PT발표 채점표 반영, 최종 사업자 심의 의결
- 심의위원: 분야에 맞는 전문 위촉직 위원 총 9인 구성(당연직 포함)
 - ※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재정담당관 인력풀 활용
- 심의결과: 선정 13개 프로젝트 ※ 예산액 4억 원
 - ※ '18년도 결정액 367,152천원 중 257,006천원 선금 지급완료

(단위:천원)

연번	단 체	사 업 명	신청액	결정액
계			374,422	367,152
1	(협)마을공방사이	폐기물의 공유:지역내 재생공유모델실험	26,200	19,630
2	피스원즈코리아/아트온어스	테라피독을 활용한 사회혁신견 프로젝트	20,362	20,362
3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주) 국도환경연구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바이오가스시설 개발운영	30,000	29,900
4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한신대,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1인가구 문제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식생활 실험	30,000	29,900
5	인왕초 학부모회/비영리아이티지원 센터	학교실내외 공기IT 데이터분석 및 예방	30,000	29,900
6	제로마켓/북센스	전통시장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험	30,000	29,900
7	에이컴퍼니	그림을 빌려드립니다	29,980	29,980
8	약속의 자전거	방치자전거의 탄생	30,000	29,900
9	(주)아망	장소기반 공공(집단)소통 플랫폼	30,000	29,900
10	숙명여자대학교/용문시장상 인회,(주)자인생태건축	「베죽B주 플레이스」 구축을 통한 시장공동체 활성화	29,580	29,580
11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서울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 로센터	자전거로충분하다 '생활자전거프로젝트'	28,500	28,500
12	CHRD	청년기업 일자리공유 네트워크, 플랫폼개발	29,800	29,800
13	비움과 채움	모두의 가게	30,000	29,900

-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조례(「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는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조항이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를 서울혁신 기획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주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단체, 기업은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 또한, 동 사업은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60억7천만원)” 보다 보조금은 소액이나 유사한 공모 사업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 유사한 공모 사업으로 볼 수 있는바,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없는 공모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자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사업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해외협력 중점 대상 기관인 로컬리티³⁾와의 협력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서울형 로컬리티의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3천만원(32.6%)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3억 9천8백만원 → 5억2천9백만원)조정하였으나, 2018년도 10월말 기준 전액 미집행하고 있음.

사업명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 로컬리티 협력사업(추경)	130,000	-
- 워크숍/포럼 기획 및 운영, 연구조사	50,000	-
- 시민자산화 사례 발굴 및 개발, 컨설팅	40,000	-
- 시민자산화 사례집 발간 및 홍보	20,000	-
- 통번역 및 기타 사무비용	20,000	-

3) <로컬리티 개요>

- 개요 : 영국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지원기관 연합체 영국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맡아온 DTA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관 Bassac가 합쳐지면서 현재의 로컬리티로 이름을 변경 (법인격 : 회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 런던조직 : 6개팀 50여명 상근직원(영국 전체 750개 회원단체)
- 주요업무 : 공동체 중심 조직의 사업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지역 공동체 혁신의 기반 마련, 조직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 및 확산

- 이는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과 불성실한 사업 집행 행태라 할 것임. 서울혁신기획관은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주의적인 태도 및 의욕만 앞서고 내실 없는 사업 구상으로 적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 지속가능하고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민관의 사회적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65억원) 대비 6.7% 감액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6,509,123	(x-) 6,509,123	(x-) 6,070,000	(x-) Δ439,123	(x-) Δ6.7
사무관리비	(x-) 509,000	(x-) 509,000	(x-) 70,000	(x-) Δ439,000	(x-) Δ86
민간경상사업 보조	(x-) 6,000,123	(x-) 6,000,123	(x-) 6,000,000	(x-) Δ123	(x-) 0

- 동 사업은 2017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게 2개년 동안 14개 단체에 보조금 80억원(최대 9억 9천 8백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음.

사업개요

- 규 모 : 115억원('17년 50억, '18년 65억원)
 - 총 14개 청년사회혁신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등
- 사업기간 : 2017.01.01. ~ 2018.12.31.
- 사업내용
 - 2017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 14개 팀에 대해 연속 지원
 - 2017년 사업진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17.12월 재평가하여 프로젝트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
- 추진 일정

- 2018년도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금 3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 : '18. 01.(사업기간 : '18. 1.~03.)
 - 2차 교부 : '18. 04.(사업기간 : '18. 4.~06.)
 - 3차 교부 : '18. 07.(사업기간 : '18. 7.~10.)
- '18.03월 중간보고회 개최로, 2017년도 사업성과 점검
- '18.11월 정산 및 실적보고, '18.12월에 최종성과보고회 및 최종평가 실시

〈프로젝트팀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18.10.15. 기준)

연번	선정법인(단체)	2017년 보조금 교부액	2018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교부 총액
1	쉐어하우스우주(주) 외1	526	411	938
2	(주)어반플레이	132	240	372
3	(주)라솜 외1	187	456	643
4	(주)인라이튼	168	286	454
5	(주)트리플래닛	328	446	775
6	(주)엔피프틴	192	277	469
7	피치마켓	103	305	408
8	(주)에이치지이니셔티브	231	388	620
9	레이즈지엘에스(주)	298	442	741
10	(주)케이오에이	118	228	346
11	(주)마인드디자인	264	260	525
12	(주)프렌트립	243	657	901
13	(주)위누	211	374	585
14	(주)터치포굿	84	154	238
총액		3,091	4,930	8,022

〈프로젝트팀별 2017년 예산 집행현황〉

(단위: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인정액	집행잔액 반납액	이자 발생액	이자 반납액
쉐어하우스우주(주) 외1	526,473,400	486,736,253	39,737,147	608	39,737,750	37,873	37,870
(주)어반플레이	132,250,000	121,630,550	10,619,450	35,500	10,654,950	8,648	8,640
(주)라솜 외1	187,038,860	168,404,480	18,634,380	879,875	19,514,250	14,352	14,350

㈜인라이튼	168,250,000	140,056,928	28,193,072	-	28,193,070	17,240	17,240
㈜트리플래닛	328,864,000	290,267,540	38,596,460	185,573	38,782,030	24,334	24,330
㈜엔피프틴	192,700,000	171,438,462	21,261,538	11,819,820	33,081,350	11,125	11,120
피치마켓	103,060,000	100,460,840	2,599,160	-	2,599,160	9,918	9,910
㈜에이치지이니셔티브	231,702,040	205,577,407	26,124,633	-	26,124,630	17,322	17,320
레이즈지엘에스㈜	298,986,470	281,109,187	17,877,283	181,802	18,059,080	28,008	28,000
㈜케이오에이	118,500,000	107,733,406	10,766,594	3,146,832	13,913,420	8,084	8,080
㈜마인드디자인	264,737,740	254,419,443	10,318,297	400,000	10,718,290	21,164	21,160
㈜프렌트립	243,212,120	187,648,043	55,564,077	2,557,120	58,121,190	21,511	21,510
㈜위누	211,827,610	183,598,608	28,229,002	-	28,229,000	17,604	17,600
㈜터치포굿	84,000,000	69,185,359	14,814,641	2,640,351	17,454,990	11,094	11,090
합 계	3,091,602,240	2,768,266,506	323,335,734	21,847,481	345,183,160	248,277	248,220

- 2017년 결산 기준 동 사업의 집행률이 68.5%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보조금 불인정액 및 집행잔액이 과도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또한 불성실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2018년도에는 14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려던 교부금 차액으로 당초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2018년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을 위한 육성프로젝트팀 선정 사업”을 수행한바도 있음.

-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

육성프로젝트팀 선정 추진 현황

I 공 모 접 수

- 일 시 : '18. 10. 8.(월) ~ 10. 21.(일) 9:00 ~ 18:00
- 방 법 : 기획관리전문기관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등
- 접수단체 : 총 53개 청년 개인 및 단체 ※접수단체 명단 불임 참조

II

서 류 심 사

- 기 간 : '18. 10. 22.(월) ~ 10. 26.(금)
- 방 법 : 기획관리전문기관 및 운영위원회 서류평가
- 평가결과 : 입문캠프에 참가할 총 24개팀 선정

III

입 문 캠프

- 일 자 : '18. 11. 1.(목) ~ 11. 4.(일) (3박4일간)
- 장 소 : 서울 유진인재개발원
- 수 료 팀 : 총 24명 중 21개팀 수료 ※중도포기 3개팀
- 진 행 : 기획관리전문기관에서 육성초기단계 교육 진행

단체명	프로젝트 요약
미크	업사이클링 가방과 멸종위기동식물 배지를 제작해 수익금 일부 녹색연합에 후원 후 사용현황 공유
비공이플로어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이 초기자본과 재고문제 없이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패션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제작
NAMOW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월경컵 사용을 편하게 해주는 월경컵 클렌징 키트 제작 및 판매
119REO	방화복 재활용 판매를 통해 압 투병 소방관 후원
시소앤팜토리	Dr.Recipe 생활 질환 개선을 위한 농식품 큐레이션 정기구독 서비스
춤추는제자리표	RAP(음악)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 아동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Wheel Sidekick	비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공공자전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 서비스 개발
디마이너스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그대로괜찮은쿠키' 브랜드 설립 및 확장하여 장애인 고용창출과 올바른 장애인식교육 진흥
김용진	박물관의 전시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미션형 탐방 프로그램
김민식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 서비스
김가은	한국 소도시 여행 프로젝트, so.dosi. 수도권과 지방 사이 관광격차를 해소
김수완	경계선지능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통섭예술교육연구와 문화예술 스토리텔링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 제도적 정책 토대 마련

- 동 사업은 2019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⁴⁾하려고 하나, 보조금 중단이후에 지속적인 고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보조금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 인바, 인건비 등 운영비를 법령에 근거 없이 교부할 수 없는 문제, 유사 보조금 사업 과도 문제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4) 2019년도에는 당초 “자유주제 지원사업”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자유주제 지원사업”과 “청년 사회문제에 관한 특정주제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임.

□ 2019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1.~ 2019.12.31.
- 지원대상 : 영리·비영리 기업 또는 단체
- 사업주요내용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프로젝트 육성 및 성장 지원
 - 기획검증단계 도입 : 개인 및 단체의 아이디어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실현가능하도록 육성
 - 성장지원단계 지원 : 청년 개인 및 단체(영리-비영리 포함)의 사회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 실행 예산 및 컨설팅 등 지원
 - 기획관리전문기관 선정하여 청년 개인 및 단체(영리-비영리 모두 포함) 육성 및 전문컨설팅 지원
 - 민간영역의 청년 고용 촉진
- **세대균형 혁신프로젝트 (※ 청년 사회문제에 관한 특정주제 지원사업)**
 - 청년 사회문제 발굴 및 공론화
 -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프로젝트 육성 지원 및 평가

차. 서울 청년활동 보장

- 동 사업은 청년들의 자립도모와 청년의 활동을 사회역량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억 3천만원의 예산(전년 210억원 대비 28.4%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1,010,000	(x-) 21,010,000	(x-) 15,030,000	(x-) △5,980,000	(x-) △28.4
사무관리비	(x-) 10,000	(x-) 10,000	(x-) 30,000	(x-) 20,000	(x-) 200
기타보상금	(x-) 21,000,000	(x-) 21,000,000	(x-) 15,000,000	(x-) △6,000,000	(x-) △28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위원회자문회의 및 인쇄비 등 5,000,000*2회 = 10,000천원	○ 위원회자문회의 및 인쇄비 등 5,000,000원*4회 = 20,000천원 ○ 청년정책 홍보, 사업지원 등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사업대상 모집횟수 증가에 따른 심사 및 사업 홍보 확대	
기타보상금	○ 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0,000*6개월*7,000명 = 21,000,000천원	○ 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0,000원*6개월*5,000명 = 15,00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수당의 전국화(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사업 추진)로 청년수당 대상자 축소(7,000명 → 5,000명) - '19년 청년활동지원금 지원요건 변경(예정) * 연령 : 만19~29세 → 만19세~34세 / 자격 : 졸업자·졸업 예정 미취업 청년 → 졸업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	

- 동 사업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 (2018년도에는 만19~29세)으로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지원 하려는 것으로,
 -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사업 추진사업’으로 서울시 청년 수당과의 중복 수령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보완하였음.

2018년	2019년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u>만19세~29세의 미취업청년 7,000명</u> - 자격 : <u>졸업자·졸업 예정 미취업 청년</u>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u>만19세~34세의 미취업청년 7,000명</u> - 자격 : <u>졸업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u>
○대상자 확대 : 2017년 5,000 → 2018년 <u>7,000명</u>	○대상자 확대 : 2018년 7,000 → 2019년 <u>5,000명</u>
○지원내용 - (금 전) 매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지원내용 - (금 전) 매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총사업비 : <u>210억원</u> (500천원×6개월×7,000명), 시비100%	○총사업비 : <u>150억원</u> (500천원×6개월×5,000명), 시비100%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첫째, 현금 인출 사용 문제와 증빙 불성실 등으로 청년수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수당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둘째, 수당 수령 2개월까지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수당을 수령한 3개월째부터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수당 수령 2개월까지 부당 사용 현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바, 활동결과보고서를 첫 달부터 작성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년수당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나, 수당 중단만이 아닌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등 동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혈세를 내는 시민들에게도 청년수당 정책의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수당 지급중단 사유별 현황〉

연도	지급중단				
	합계	취업	이사	자진포기	의무사항 불이행
2017	479	206	5	33	235
2018.9월	727	398	36	21	272

※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카. 청년 인생설계 학교

- 동 사업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아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한 갭이어(gap year)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미래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6억 8천만원의 예산(전년 예산 3억원 대비 126.6%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00,000	300,000	680,000	380,000	126.6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30,000	△70,000	△70.0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00	200,000	0	△200,000	△1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0	0	650,000	650,000	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스널브랜딩 및 컨설팅 등 지원(300명) 100,000,000원 <p style="text-align: right;">= 10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참석수당 등 사업관리비 30,000,000원 <p style="text-align: right;">= 3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대관 및 간담회비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참석자 수당 4,000,000원*2회 = 8,000천원 - 자료인쇄 등 3,000,000원*2회 = 6,000천원 - 다과 등 2,000,000원*2회 = 4,000천원 - 일반사업관리비 1,000,000원*2회 = 2,000천원
	증감사유	
	2018년도 '청년 인생설계 학교' 사업 점검 및 2019년도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인생설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300명) 200,000,000원 <p style="text-align: right;">= 200,000천원</p>	
	증감사유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변경(전액감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생설계학교 홍보 = 50,000천원 - 온라인 홍보 5,000,000원*3회 = 15,000천원 - 영상물 홍보 10,000,000원*2회 = 20,000천원 - 신문, 잡지 등 홍보 5,000,000원*3회 = 15,000천원 ○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2,000,000원*300명 = 600,000천원 - 회의비 등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인건비, 지원비 등 32,000,000원*2회 = 64,000천원 - 모니터링 여비 1,000,000원*2회 = 2,000천원 - 임차료, 인쇄비 등 22,000,000원*2회 = 44,00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 행사운영비, 홍보비 등 235,000,000원*2회 = 470,000천원 회의운영비 5,000,000원*2회 = 10,000천원
	증감사유	
	청년인생설계학교 대상자 증가('18년 200명-'19년 300명) 홍보비 순증	

※ 갭이어(Gap Year)란 봉사, 여행, 교육, 진로탐색, 직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향후의 진로를 설정하는 활동(또는 기간)

-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시 2억원의 예산이 삭감(5억원⇒3억원)된바 있고, 동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2018년 5월 31일)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49.8%로 저조한 상황임.

(단위 : 천원)

변경구분	예산과목		당초예산액	금액		최종예산액	10월말 현재 집행액	승인일자	사유
	사업명	통계목		감	증				
전용	청년인생설계학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	-	2018.05.31.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 선정·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무관리비	100,000		200,000	300,000	149,500		

- 동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대행 계약을 체결(예산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또한 동 법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음.

〈2018년도 사업 진행 개요〉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19~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0명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청년 우선 선발, 모집 및 선발은 市에서 추진

○ 사업기간 : 2018. 07. ~ 12.

○ 사업예산 : 295,000천원

○ 추진방법 : 市 청년정책담당관-평생교육진흥원 사업대행 계약 체결

○ 사업의 주요내용

- 청년 스스로 진로, 적성 탐색 및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퍼스널브랜딩 및 컨설팅 지원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탐구활동, 체험활동, 자원활동 등)발굴 운영

- 서울혁신기획관은 법령에 근거 없이 동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행(예산 전용)하였으며, 2019년 예산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민간대행사업은 민간위탁과 달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대행사업 증가가 우려되는바, 법적인 근거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대행사업이 의회의 감시·감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 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u>자본형성적 사업 외</u> 제반 경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대 행

-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간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 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 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법제처 2015.4.2. 15-0080)
- 대행은 권한대행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⁵⁾와 개별법령에서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민간대행은 민간위탁⁶⁾과는 개념상의 책임 소재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운영 체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위탁과 구분 실익은 크지 않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이 생애전환기인 청년들의 진로·적성 탐색 및 인생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5)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6)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 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자 모집 결과〉

(단위 : 명)

신청자			선발 결과			
1차 모집 (‘18. 8.17. ~ 27.)		연장 모집 (~‘18. 8.31.)	합계	적격	예비자	취소 부적격
우선	일반					
49	137	42	228	200	12	16

※ 당초 200명 선발 예정이었으나 신청 인원이 미달(총 186명)되어 연장 모집하였으며, 1차 모집 시 우선 선발 인원이 계획 대비 미달(60명 모집, 49명 지원)되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구분 없이 선착순 모집 함.

- 그러나, 동 사업은 연장 모집을 통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았음에도 200명 선발에 228명이 신청하였는바, 동 사업이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민간에서 시행하는 영리 목적 깡이어 사업과 공공의 영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깡이어 사업은 차이가 있고, 청년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전액 깡이어 비용 지원) 등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어려운바, 동 사업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동 사업이 수용가능성을 높여야할 것이며,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인생 설계학교 중 미니깡이어 프로그램〉

미니깡이어

대 상 : 청년의 깡이어를 하고 싶은 청년
 장 소 : 100명
 일 정 : 11월 19일(월) ~ 30일(토) 2주 간
 강 령장 소 : 제주, 자카르타 (주부 제공)
 문의전화 : 02-719-6429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알아보고, 영감을 나눠주세요!
 미래는 직접 깡여를 치러드립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여러분의 "깡이어"를 깡여나와 지원해 드립니다.
 더 길게 고민해도 좋고, 혹은 자유롭게 실험해도 좋습니다.

정식 서울을 떠나, 무엇을 해도 괜찮은 2주 청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니깡이어 세부내용

신청 기준

11월 5일 기준 총 100세대 이상 거주인 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OT + 일선하기, 사무장기, 관제장기, 학생하기 모든 영역에서 거주 필수)
 대상자를 선정 시 거주자 50명당 선정됩니다. (세부 기준 주부 별도 공지)

참가 신청

10월 초, 미니 깡이어 장소를 공지하고 신청서 양식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깡이어 참여 목적과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선착 순위에 따라 참가 대상자 선정을 보려드립니다.

지원 내용

항공 교통비와 숙박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활동 중 소요되는 개인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깡이어 돌면서 개인적 생각, 느낌, 활동 내용을 글, 사진, 영상, 그림 등 자신에게 적합한 형식으로 표현해 기록해주세요.
 깡이어를 할 무렵은 사원들, 깡이어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깡이어를 말할 수 있는 캠페인 차교로 활용됩니다.

- 다만, 동 사업의 공공부문 추진 타당성 여부와 동 사업의 성과 측정 가능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재 동 사업은 서울시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강좌)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일정기준 충족자에 대해 수료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인지 여부와 함께,
- 진로, 적성 탐색 등의 주된 목적이 취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간 과정 이수의 어려움, 중도 포기자 속출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동 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도 동 사업 관련 자문회의 결과> 참고

〈자문의견〉

- 경험자체가 자산화 되진 않으므로, 정교한 학습설계로 성공여부 결정 (000위원)
-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000위원)
- 「자존감이 낮고 무기력한 계층」에 효과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추진하는 사업인지 여부(000위원)
- 공공영역에서 성과를 간과할 순 없지만, 성과에 연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결과물은 무엇인지 여부(000위원)
 - 효과적인 프로그램 발굴과 당사자의 참여율, 결과보다 과정 중시(보고서 등)
- 개별 평가가 어렵다면, 사회적 성과로 측정(협력기관의 간접적 산출물 등) 할 수 있는지 여부(000위원)
- 갭이어를 시간 낭비가 아닌 생의 설계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합의 필요

- 특히, 2018년도 사업 수행 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그 성과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바, 사업의 추진시기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추진 계획(안)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 ~ 29세 미취업 청년 (일정비율 소득기준 우선선발)
- 지원규모 : 300명(1기 150명, 2기 150명)
- 지원기간 : 1기(4월~6월), 2기(9월~11월)

오리엔테이션	자기탐색	캠프	배움/체험	미니갭이어	수료식
-	3~4회	2박3일	6주	2주	-
.갭이어이해 .기준안내 .네트워크파티	.자기브랜드 .자기진단검사 .포트폴리오작성 안내	.휴식과 재충전 .소그룹조직	.자아·인생탐구 .시정참여체험 .공동체참여 .자원봉사활동 등	.제주도 무전여행 .지리산에서 살아 보기 .템플스테이 등	.스토리공유 .아카이빙 콘텐츠 상영

• 사업주관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타.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

- 동 사업은 국내·외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청년교류의 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5억 4천만원(민간위탁금, 전년 5억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37,000	(x-) 537,000	(x-) 590,190	(x-) 53,190	(x-) 9
사무관리비	(x-) 0	(x-) 0	(x-) 50,000	(x-) 50,000	(x-) 0
민간위탁금	(x-) 537,000	(x-) 537,000	(x-) 540,190	(x-) 3,190	(x-) 0

〈세부 산출 기초〉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년교류공간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및 포럼 개최 등 50,000,000 = 50,000천원
		증감사유 청년교류공간 활성화 사업을 위한 컨퍼런스 및 포럼 개최 등
민간위탁금	○ 인건비 = 124,000천원	○ 인건비 = 129,130천원
	- 센터장(1) = 42,000천원	- 센터장(1) = 42,00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 매니저(2) = 72,000천원	- 매니저(2) = 72,000천원
	- 4대 보험료 = 10,000천원	- 4대 보험료 = 15,130천원
	○ 운영비 = 306,000천원	○ 운영비 = 221,917천원
	- 임대료 = 66,000천원	- 임대료 = 66,000천원
	- 공공요금 및 세재 = 24,000천원	- 공공요금 및 세재 = 24,000천원
	- 운영비 = 43,200천원	- 운영비 = 43,200천원
	- 사무관리비 = 9,600천원	- 사무관리비 = 9,600천원
	- 국내여비 = 4,800천원	- 국내여비 = 4,800천원
	- 시설운영(야간) = 158,400천원	- 시설운영 = 74,317천원
	○ 사업비 = 107,000천원	○ 사업비 = 189,143천원
	- 청년활동그룹 간 교류활성화 사업 = 52,000천원	- 기획교류사업 = 76,790천원
	-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적 교류사업(학습형) = 42,000천원	- 일상교류사업 = 80,383천원
	- 정보공유를 위한 청년교류공간 홍보 = 13,000천원	- 정보공유를 위한 청년교류공간 홍보 = 31,970천원
	증감사유	
	2018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 3,190천원 증가 운영시간 변경(변경 전:24시간 변경 후:오전10시~오후10시)으로 인한 야간운영비 감소에 따른 운영비84,083천원 감소 청년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82,143천원 증가	

- 다만, 동 사업의 2017년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시 제기되었던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주취자 관리문제, 안전사고 등의 발생 문제와 소수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이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및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 시설은 건축물 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음에도 숙박을 포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 법령 저촉여부와 화재 및 안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의회에서 의결받은 대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9대 제276회 제2차 회의 회의록(2017년 9월)

6.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시)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견을 나눠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청년교류공간을 24시간 운영하다 보면 운영에 따른 숙박을, 잠을 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는 설계변경으로 숙박공간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집행부의 변경사항을 통보받았는데 꼭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등 유사시설로 이용 가능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 유념하고요.

나머지 한 부분은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고, 또 상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시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0대 제283회 제2차 회의 회의록(2018년 9월 6일)

○한기영 위원 이럴 거면 차라리 무중력지대로 합쳐서 서울에는 청년공간으로 무중력지대가 있다든지 무중력지대가 서울의 청년커뮤니티로서 대표성을 띠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 홍보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포의 청년교류공간 같은 경우에는 숙박은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저희가 4층에 숙박업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정도의 시설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무중력지대가 늘어나니까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사실상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통합운영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하나하나마다 통합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방안들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입니다.

- 한편, 청년교류공간의 예산 집행률은 9월말 기준 60.7%였으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무와 유사한바, 중복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청년교류공간〉

(단위:천원)

예산집행 현황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산액 (반납액)	전용 또는 변경액	전용(변경) 내역
2018	494,750	300,418	194,331	해당없음	-	-

파.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의 의제를 발굴 및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9억 3천 2백만원(전년 예산 3억3천 2백만원 대비 180.6%)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32,200	(x-) 332,200	(x-) 932,200	(x-) 600,000	(x-) 180.6
사무관리비	(x-) 207,000	(x-) 207,000	(x-) 507,000	(x-) 300,000	(x-) 144
행사운영비	(x-) 120,000	(x-) 120,000	(x-) 120,000	(x-) 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5,200	(x-) 5,200	(x-) 5,200	(x-) 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0	(x-) 0	(x-) 300,000	(x-) 300,000	(x-) 0

- 주된 사업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정책워크숍 및 컨퍼런스, 청년교류단체 지원(신규)” 등이 있음.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년정책위원회 등 운영 18,000,000원 = 18,000천원	○ 청년정책위원회 등 운영 64,000,000원 = 64,000천원
	○ 청년정책관련 연구조사 및 컨퍼런스 185,000,000원 = 185,000천원	○ 청년정책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홍보 193,000,000원 = 193,000천원
	○ 청년정책 워크숍 및 거버넌스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 청년교류사업 자문, 심사, 정책모델 개발 및 홍보 등 50,000,000원 = 50,000천원
		○ 세대균형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180,000,000원 = 180,000천원
		○ 세대균형지표 관련 자문, 심사, 발표회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증감사유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개최 운영, 전문가 자문, 워크숍 등 46,000천원 증액 - 청년정책교류사업 자문, 심사, 정책모델 개발 등 50,000천원 증액 - 세대균형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180,000천원 증액 - 세대균형지표 관련 자문, 심사, 발표회 등 20,000천원 증액	
행사운영비	○ 청년정책교류회 120,000,000 = 120,000천원	○ 청년정책교류회 120,000,000원 = 120,000천원
	증감사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청년정책 워크숍 및 컨퍼런스 5,200,000원 = 5,200천원	○ 청년정책 워크숍 및 컨퍼런스 5,200,000원 = 5,200천원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 청년교류사업 단체 지원금 100,000,000원*3개단체 = 30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교류사업 단체 지원금 300,000천원 증액	

- “청년교류단체 지원사업”은 신규로 청년교류 사업 단체에 공모를 통해 1억원씩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리빙랩 등)과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와 서울시민의 혈세를 서울시민이 아닌 전국단위의 청년들과 교류하는 사업(청년정책교류회)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사업의 “청년정책위원회 등 운영” 항목은 2019년도에 6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2018년 회의 개최실적은 1회, 예산(1천8백만원) 집행액은 240만원에 그치고 있는바,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는 12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회의 개최 실적과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바, 전례답습적으로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운영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각 사업의 위원회 관련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과도한 경우, 예산 삭감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및 관련 예산(산출기초별) 집행 내역〉

○ 2018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위원회명	개최 횟수	예산집행내역		
			예산	지출액	집행내역
1	공유촉진위원회	1	10,000	3,059	- 참석 및 심사수당 1,650천원 - 다과비, 위촉장 제작 등 운영비 1,409천원
2	창의상심사위원회	2	22,110	5,873	- 참석 및 심사수당 3,35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2,523천원
3	서울협치협의회	2	15,400	3,067	- 참석수당 2,700천원 - 다과비 등 367천원
4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4	10,000	6,645	- 참석 및 심사수당 4,65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등 1,995천원
5	공익사업선정위원회	2	22,500	12,080	- 참석 및 심사수당 6,20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5,880천원
6	기부심사위원회	8	7,800	3,540	- 참석 및 심사수당 3,540천원
7	마을공동체위원회	3	14,775	5,656	- 참석 및 심사수당 2,35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3,306천원
8	청년정책위원회	1	18,000	2,427	- 참석 및 심사수당 1,40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등 1,027천원
9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심의위원회	1	2,600	700	- 심사수당 700천원
10	갈등관리심의회위원회	3	9,100	4,885	- 위원 수당 4,350천원 - 다과 비용 등 535천원
11	인권위원회	22	64,868	64,868	- 참석 및 심사수당 24,700천원 - 그 외 운영경비 40,168천원
1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12	30,000	30,000	- 참석 및 심사수당 8,800천원 - 그 외 운영경비 21,200천원

○ 2017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위원회명	개최 횟수	예산집행내역		
			예산	지출액	집행내역
1	공유촉진위원회	2	3,590	3,590	- 참석 및 심사수당 1,350천원 - 다과비, 위촉장 제작 등 운영비 2,240천원

연번	위원회명	개최 횟수	예산집행내역		
			예산	지출액	집행내역
2	창의상심사위원회	4	22,110	14,516	- 참석 및 심사수당 7,30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7,216천원
3	서울협치협의회	4	19,200	13,386	- 참석수당 5,55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등 7,836천원
4	시민공익활동촉진 위원회	3	10,000	5,207	- 참석 및 심사수당 3,75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등 1,457천원
5	공익사업선정위원회	4	22,500	17,750	- 참석 및 심사수당 9,20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8,550천원
6	기부심사위원회	11	7,800	6,824	- 참석 및 심사수당 6,30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524천원
7	마을공동체위원회	3	37,225	29,015	- 참석 및 심사수당 3,300천원 - 인쇄비 , 다과비 등 2,754천원 - 이슈포럼 개최 비용(4회) 22,961천원
8	청년정책위원회	1	2,544	2,544	- 참석 및 심사수당 1,50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등 1,044천원
9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심의위원회	2	1,963	1,963	- 심사수당 1,600천원 - 운영비 363천원
10	갈등관리심의위원회	4	9,100	6,512	- 위원 수당 6,350천원 - 다과 비용 등 162천원
11	인권위원회	26	52,203	52,203	- 참석 및 심사수당 27,750천원 - 그 외 운영경비 24,453천원
12	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	15	28,427	28,427	- 참석 및 심사수당 7,450천원 - 그 외 운영경비 20,977천원

○ 2016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위원회명	개최 횟수	예산집행내역		
			예산	지출액	집행내역
1	공유촉진위원회	4	9,216	9,216	- 참석 및 심사수당 6,250천원 - 다과비, 위촉장 제작 등 운영비 2,966천원
2	창의상심사위원회	4	22,110	16,584	- 참석 및 심사수당 7,00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9,584천원
3	서울협치협의회	1	19,000	2,129	- 참석수당 1,60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등 529천원
4	시민공익활동촉진 위원회	4	10,000	10,000	- 참석 및 심사수당 6,47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등 3,530천원
5	공익사업선정위원회	3	19,800	17,950	- 참석 및 심사수당 8,50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9,450천원
6	기부심사위원회	11	7,200	4,550	- 참석 및 심사수당 4,550천원
7	마을공동체위원회	2	44,225	8,315	- 참석 및 심사수당 3,150천원 - 인쇄비, 다과비 등 1,150천원 - 위원회 워크숍 운영비 등 4,015천원
8	청년정책위원회	3	4,523	4,523	- 참석 및 심사수당 3,450천원 - 인쇄비 및 다과비 등 1,073천원
9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심의위원회	4	2,600	2,600	- 심사수당 2,600천원

연번	위원회명	개최 횟수	예산집행내역		
			예산	지출액	집행내역
10	갈등관리심의위원회	4	9,100	7,326	- 위원 수당 6,500천원 - 다과, 현수막 등 준비물품 826천원
11	인권위원회	27	53,850	53,850	- 참석 및 심사수당 30,119천원 - 그 외 운영경비 23,731천원
12	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	3	23,246	23,246	- 참석 및 심사수당 1,650천원 - 그 외 운영경비 21,596천원

하. 서울시 NPO 지원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과 민관협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와 “서울시 NPO 지원센터”등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32억 4천만원(전년예산 19억5천1백만원 대비 66.%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951,806	(x-) 1,951,806	(x-) 3,240,835	(x-) 1,289,029	(x-) 66.0
사무관리비	(x-) 10,000	(x-) 10,000	(x-) 533,920	(x-) 523,920	(x-) 5,239.2
민간위탁금	(x-) 1,941,806	(x-) 1,941,806	(x-) 2,282,835	(x-) 341,029	(x-) 17.5
시설비	(x-) 0	(x-) 0	(x-) 418,360	(x-) 418,360	(x-) 0
감리비	(x-) 0	(x-) 0	(x-) 5,720	(x-) 5,720	(x-) 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10,000,000원 = 10,000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10,000,000원 = 10,000천원
		○ NPO도서관 조성 = 523,920천원 - 임차경비 440,000,000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 440,000천원 - 운영비품 구입 등 83,920,000원 = 83,920천원
	증감사유	
	○ NPO도서관 조성 : 800㎡ 공간 임차경비(보증금, 임차료 등) 및 비품구입 등 -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장하여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기록·도서·자료를 모으고 공유하는 도서관 조성 -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쉽게 공익활동을 접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	
민간위탁금	○ 인건비(15명) 717,910,000 = 717,910천원 ○ 운영비 423,896,000원 = 423,896천원 ○ 사업비 = 800,000천원 - NPO성장종합지원 275,000,000원 = 275,000천원 - 사회변화추진 205,800,000원 = 205,800천원 - 공익활동기반조성 319,200,000원 = 319,200천원	○ 인건비(16명) 769,411,000원 = 769,411천원 ○ 운영비 435,813,213원 = 435,814천원 ○ 사업비 = 1,077,610천원 - NPO변화지원 329,000,000원 = 329,000천원 - 공익생태계활성화 285,000,000원 = 285,000천원 - 공익활동기반조성 463,610,000원 = 463,610천원
	증감사유	
	○ 인건비 : 1.8% 임금인상 및 1인 증원 - 시민사회 제도정책 개선 및 NPO도서관 조성 등 신규사업 담당 ○ 사업비 - NPO변화지원 · 조직변화지원사업 : 지원 대상 확대 및 5년간 추진사업 임팩트 평가 실시 · 비영리스타트업 : 지원 대상 확대 · 활동가 연구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연구멘토링 강화 등 - 공익생태계 활성화 · NPO지원박람회 : NPO파트너 페어(지원박람회) 규모 확대 등 · 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2개 지역) 등 - 공익활동 기반조성 · 시민사회발전연구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 및 정책 연구, 기초자료 분석, 정책연수 등 · NPO도서관 조성 및 운영 기획 · 공익활동 민간단체 입주협업공간 확충 타당성 연구 등	
시설비		○ NPO도서관 조성 = 418,360천원 - 리모델링 공사비 400,000,000원 = 400,00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 설계비 18,360,000원 = 18,360천원
		증감사유
		○ NPO도서관 조성 : 리모델링 공사비 및 설계비 - 공사비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500,000원/㎡ x 800㎡ - 설계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해당 요율범위내(설계비4.59%)
감리비		○ NPO도서관 조성 = 5,720천원 - 감리비 5,720,000 = 5,720천원
		증감사유
		○ NPO도서관 조성 :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 감리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해당 요율범위내(감리비1.43%)

- 동 사업 중 “NPO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억 3천 3백만원, ‘시설비’ 4억 1천 8백만원, ‘감리비’ 570만원 등 총 9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과목구분	2019년 예산(안)	
		총 948,000천원
사무관리비	NPO도서관 조성	= 523,920천원
	임차경비	= 440,000천원
	운영비품 구입 등	= 83,920천원
시설비	NPO도서관 조성	= 418,360천원
	리모델링 공사비	= 400,000천원
	설계비	= 18,360천원
감리비	NPO도서관 조성	= 5,720천원
	감리비	= 5,720천원

- “NPO도서관 조성” 사업은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확장하여 시민사회 공익 활동과 관련된 기록·도서·자료를 모으고 공유하는 도서관을 조성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NPO도서관을 조성하여 직영하려는 것이나, 당초 사무관리비로 인건비 내역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세부 산출 기초를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미비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속에서 NPO라는 특수분야에만 국한된 도서관을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건립하는 당위성과 타당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NPO도서관 조성예정 공간인 “부림빌딩 3층”은 당초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민간 위탁동의안 제출시(2017년 11월) 인권센터를 조성하려던 공간으로, 동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가운데 임차공간만을 확정된 것으로 보여짐.
- 제9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인권센터 설치가 어렵게 되자, 동일한 장소에 NPO도서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공간에 NPO도서관을 조성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안)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소 재 지	후보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3층 ※ 후보지 임차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의 유사면적 사무공간 임대		
시설규모	264㎡ 내외 (전용면적 기준)		
시설용도	사무공간(99㎡) 및 교육공간(165㎡)		
준공일자	-	개관일자	2018. 5월 (예정)
이용대상	시민, 단체, 공무원	수용인원	80명 이상
위 치			

- 한편, 부림빌딩 인근에는 서울도서관이 있으며 필요시 서울 도서관에서 특수한 분야의 도서 및 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는바, NPO에 한정된 분야의 도서관 건립이 타당한지 여부와 임차경비 4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부림빌딩 3층에 NPO도서관을 조성해야하는지 여부 및 향후 운영방안 미비 등 동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거.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 동 사업은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활력소 거점 공간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50억8천5백만원)”, “마을활력소 등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7억4천3백만원)”,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2억1천4백만원)” 등에 총 65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잔년대비 67.4% 감액)을 편성 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7,173,840	11,398,840	6,562,673	△4,836,167	△67.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	0	80,920	80,920	0
사무관리비	(x-) 130,040	(x-) 130,040	(x-) 165,300	(x-) 35,260	(x-) 27.1
공공운영비	(x-) 28,800	(x-) 28,800	(x-) 29,300	(x-) 500	(x-) 1
행사운영비	(x-) 0	(x-) 0	(x-) 154,000	(x-) 154,000	(x-) 0
민간위탁금	(x-) 530,000	(x-) 530,000	(x-) 743,003	(x-) 213,003	(x-) 4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215,000	(x-) 215,000	(x-) 214,550	(x-) △450	(x-) 0
시설비	(x-) 0	(x-) 0	(x-) 90,000	(x-) 90,000	(x-) 0
자치단체 자본보조	(x-) 6,270,000	(x-) 10,495,000	(x-) 5,085,600	(x-) △5,409,400	(x-) △86.2

- 서울혁신기획관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네트워킹 활성화로 공동체의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이미 조성한 마을활력소 운영지원과 거점 공간 2개소(송파, 중랑)의 조성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4개소) 공모를 통해 추가로 조성 하려는 것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마을활력소 시범조성 (유휴가입장, 2개소) · 신림(관악) · 천연(서대문)	▶ 서울시 마을활력소 추가조성(2개소) · 마포마을활력소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지원(7개소) · 상계동(노원) · 방학천(도봉) · 대림2동(영등포) · 천왕역(구로) · 성내2동,천호동(강동) · 목2동(양천)	▶ 서울시 마을활력소 추가조성(1개소) · 길음중(성북) ▶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지원(12개소) · 가리봉동,구로중(구로) · 마장동,용답동(성동) · 토정마을,한우리마을(은평) · 화기동,휘경동(동대문) · 신대방동(동작) · 글샘공원(송파) · 시흥동(금천) · 종암동(성북)	▶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지(10개소) · 동작 · 강동(2) · 중랑 · 은평 · 구로 · 송파 · 도봉(3)	▶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지(2개소) · 중랑 · 송파

<용어정리>

마을배움터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현실에 따라 경쟁 및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청소년, 청년 및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마을 안에서 보듬고 소통을 통한 건전한 성장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임

* 마을배움터 기능

-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배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발굴
- 청소년, 청년 및 마을주민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에 반해 민간 사유 시설에 조성된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성이 미흡(임대계약 만료, 젠트리 피

케이션)함에 시, 구에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권역별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임

*** 마을활력소 기능**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 동 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해주는 마을활력소는 그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이 미비한 상태인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조성 및 운영 현황(2015~2018)〉

연번	연도	구 분	자치구	행정동	완공여부	운영현황	예산액 (백만원)
1	2015	찾동마을활력소	성동	금호1가동	완공(2016. 1월 개소)	구 민간협약	298
2	2015	찾동마을활력소	성북	동선동	완공(2016. 1월 개소)	구 민간협약	228
3	2015	찾동마을활력소	도봉	방학3동	완공(2016. 2월 개소)	구 민간협약	308
4	2015	찾동마을활력소	금천	독산4동	완공(2016. 12월 개소)	구 직영	258
5	2016	마을활력소	관악	삼성동	완공('16.9월개소, '18.8월직영)	시 직영	352
6	2016	마을활력소	서대문	천연동	완공(2017. 3월 개소)	구 위탁	317
7	2016	마을활력소	마포	성산1동	완공(2018. 7월 개소)	시 위탁	2,800
8	2016	마을배움터	강북	우이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시 위탁	1,178
9	2016	마을활력소	노원	상계1동	완공(2018. 5월 개소)	구 직영	700
10	2016	마을활력소	도봉	방학2동	완공(2017. 6월 개소)	구 직영	400
11	2016	마을활력소	영등포	대림2동	완공(2017. 8월 개소)	구 민간협약	180
12	2016	마을활력소	구로	천왕동	완공(2017. 5월 개소)	구 직영	500
13	2016	마을활력소	강동	성내2동	완공(2018. 10월 개소)	구 직영	1,500
14	2016	마을활력소	강동	천호2동	완공(2016. 12월 개소)	구 직영	200
15	2016	마을활력소	양천	목2동	완공(2017. 6월 개소)	구 위탁	100

연번	연도	구분	자치구	행정동	완공여부	운영현황	예산액 (백만원)
16	2016	찾동마을활력소	성동	마장동	완공(2017. 5월 개소)	구 민관협약	285
17	2016	찾동마을활력소	도봉	방학1동	완공(2017. 7. 20. 개소)	구 민관협약	285
18	2016	찾동마을활력소	금천	독산1동	완공(2016. 12월 개소)	구 직영	285
19	2017	마을활력소	구로	가리봉동	완공(2017. 6월 개소)	구 직영	420
20	2017	마을활력소	은평	역촌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민관협약	200
21	2017	마을활력소	은평	진관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직영	180
22	2017	마을활력소	동대문	회기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위탁	150
23	2017	마을활력소	동대문	회경1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위탁	300
24	2017	마을활력소	동작	신대방2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직영	573
25	2017	마을활력소	성동	사근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민관협약	430
26	2017	마을활력소	성동	용답동	완공(2017. 8월 개소)	구 위탁	70
27	2017	마을활력소	송파	문정동	완공(2017. 9월 개소)	구 직영	50
28	2017	마을활력소	금천	시흥5동	완공(2018. 9월 개소)	구 직영	2,000
29	2017	마을활력소	구로	구로4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교육청 운영	1,500
30	2017	마을활력소	성북	종암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위탁	1,000
31	2017	마을활력소	성북	갈음동	완공(2018. 2월 개소)	학교 운영	200
32	2017	찾동마을활력소	서대문	북가좌1동	완공(2018. 6.30. 개소)	구 민관협약	235
33	2017	찾동마을활력소	은평	갈현1동	완공(2018. 6.25. 개소)	구 민관협약	235
34	2017	찾동마을활력소	영등포	문래동	완공(2018. 7월 개소)	구 민관협약	235
35	2017	찾동마을활력소	동작	대방동	완공(2018. 6.30 개소)	구 민관협약	335
36	2018	마을활력소	동작	사당2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직영	200
37	2018	마을활력소	강동	명일2동	완공(2018. 7월 개소)	구 직영	500
38	2018	마을활력소	중랑	상봉1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민관협약	100
39	2018	마을활력소	은평	응암3동	공사중(2019. 9월 개소예정)	구 직영	200
40	2018	마을활력소	구로	가리봉동	공사중(2020. 1월 개소예정)	구 직영	1,500
41	2018	마을활력소	송파	거여동	공사중(2020. 9월 개소예정)	구 직영	1,100
42	2018	마을활력소	도봉	창2동	공사중(2020. 1월 개소예정)	구 위탁	500
43	2018	마을활력소	도봉	창5동	공사중(2018. 12월 개소예정)	구 민관협약	200
44	2018	찾동마을활력소	강북	번3동	공사중(2019. 9월 개소예정)	구 직영	200
45	2018	찾동마을활력소	광진	중곡4동	공사중(2019. 9월 개소예정)	구 직영	200

- 또한,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집행이 부진하고 차년도 이월이 과도하여 매년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바, 시민의 혈세로 거둔 당해 연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7년 마을활력소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천원)

자치구	행정동	2017회계연도				
		전년도이월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차년도이월액
-	-	계: 2,945,294	계: 8,293,000	계: 6,505,059	계: 5,501	계: 4,727,734
관악	삼성동	-	15,000	3,898	-	11,102
노원	상계1동	700,000	-	700,000	-	-
구로	천왕동	501,743	-	501,727	16	-
강동	성내2동	1,500,000	-	1,314,481	-	185,519
성동	마장동	243,551	10,000	250,278	3,273	-
도봉	방학1동	-	10,000	10,000	-	-
금천	독산1동	-	10,000	10,000	-	-
구로	가리봉동	-	420,000	17,172	-	402,828
은평	역촌동	-	200,000	16,170	840	182,990
은평	진관동	-	215,000	215,000	-	-
동대문	회기동	-	150,000	22,420	-	127,580
동대문	휘경1동	-	400,000	303,500	-	96,500
동작	신대방2동	-	573,000	39,716	-	533,284
성동	사근동	-	430,000	-	-	430,000
성동	용답동	-	70,000	69,962	38	-
송파	문정동	-	50,000	49,736	264	-
금천	시흥5동	-	2,000,000	2,000,000	-	-
구로	구로4동	-	1,500,000	28,200	-	1,471,800
성북	종암동	-	1,000,000	438,335	-	561,665
성북	길음동	-	200,000	200,000	-	-
서대문	북가좌1동	-	235,000	235,000	-	-
은평	갈현1동	-	235,000	13,104	430	221,466
영등포	문래동	-	235,000	31,500	-	203,500
동작	대방동	-	335,000	34,860	640	299,500

- 또한, 2018년도에도 동 사업은 3건을 전용하였으며, 매년 전용, 변경 사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바, 정확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전용, 변경사용 내역〉

구 분 연 도	예 산 과 목		당초 예산액	전용/변경사용 금액		최종 예산액	집행액	승인 일자	전용/변경사용 세부사유
	세부 사업	통계목		감	증				
2016	근린 생태 계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00	300,000	-	-	-	2016-09-09	천왕역사 내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변경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27,000 0	-	300,000 0	457,000	457,000		
2017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자치단체 경보 조 금	250,000	100,000	-	150,000	35,000	2017-08-25	동 대 문 구 마을활력소(취경지하보도) 조성과정 중 추가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경상보조금 일부를 자본보조로 전용
		자치단체 자본보조	687,300 0	-	100,000 0	697,300	654,300		
2018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자치단체 경보 조 금	215,000	35,950	-	179,050	146,644	2018-08-17	시 직영으로 행복나무 마을 활력소를 운영함에 따라 소요 비용 전용 -「행복나무 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협약 해지('17.8) 후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17.9)되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 하였으나, 관악구가 추진 포기함에 따라 주민 자율운영 체계가 안정될 때까지 마을활력소 정상화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
		기 간 로 제 자 수 등 보 수	-	-	24,950	24,950	10,021		
		행 운 영 사 비	-	-	11,000	11,000	-		
2018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627,000	56,960	-	1,043,040	469,770	2018-08-17	임대차 계약 종료로 발생한 공간 시설 개선 및 운영 비용 전용 -임차인 퇴거('18.8.15.)후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간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전용
		민 위 탁 간 금	530,000	-	56,960	586,960	527,903		

- 동 사업은 수요 및 필요성 등의 사전 조사와 자치구별 형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마을활력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특정 주민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공공의 영역에서 공간지원과 설립이 인근 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마을활력소 등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치구별 현황 (2018. 9. 30. 현재)〉

연번	자치구	계	마을활력소			마을배움터
			소계	일반	찾동	
	계	45	44	31	13	1
1	종로					
2	중구					
3	용산					
4	성동	4	4	2	2	
5	광진	1	1		1	
6	동대문	2	2	2		
7	중랑	1	1	1		
8	성북	3	3	2	1	
9	강북	2	1		1	1
10	도봉	5	5	3	2	
11	노원	1	1	1		
12	은평	4	4	3	1	
13	서대문	2	2	1	1	
14	마포	1	1	1		
15	양천	1	1	1		
16	강서					
17	구로	4	4	4		
18	금천	3	3	1	2	
19	영등포	2	2	1	1	
20	동작	3	3	2	1	
21	관악	1	1	1		
22	서초					
23	강남					
24	송파	2	2	2		
25	강동	3	3	3		

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 본 사업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연구, 자치구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 서울형 커뮤니티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동단위 마을자치 조성지원, 마을공동체 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8억 2백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18억 5천 4백만원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2018년 대비 3.0% 감액한 총 54억 8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656,594	(x-) 5,656,594	(x-) 5,481,521	(x-) △175,073	(x-) △3.0
민간위탁금	(x-) 5,656,594	(x-) 5,656,594	(x-) 5,481,521	(x-) △175,073	(x-) △3.0

〈2019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5,656	5,656	5,481	△175	△3.1%
행정운영경비	1,854	1,854	2,112	258	13.9%
인건비	1,404	1,404	1,607	203	14.5%
운영비	450	450	505	55	12.2%
사업비	3,802	3,802	3,369	△433	△11.4%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235	235	247	12	5%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217	217	295	78	36%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	610	610	353	△257	△42%
마을공동체 홍보 전파	378	378	341	△37	△10%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544	544	772	228	42%
동마을자치생태계 조성 지원 (찾동 추진지원단 포함)	1,818	1,818	1,361	△457	△25%

구분	2018년 도예산(안)	산출기초(안)	2019년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5,656		5,481	
민간위탁금	5,656		5,481	
인건비	1,404	- 센터 인원 총 29명	1,607	- 센터 인원 총 29명
운영비	450		505	
사업비 (소계)	3,802		3,369	
마을공 동체 정책 연구	270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신진연구자 발굴 및 연구지원 90 - 단계별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연구 102 - 마을공동체 제도화 연구 50 - 연구성과 종합보고 공유회 등 28	247	-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정책연구 및 지원 184 - 연구관리 및 성과확산 63
마을공 동체 활동가 역량 강화	217	- 마을활동가 성장교육 107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마을교육 아카이브 등 교육기반 조성 110	295	- 마을활동가 성장교육 105 - 교육기반조성 120 - 청년마을활동가 성장교육 70
자치구 지역공 동체 기반조 성지원	610	-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실행지원 167 - 자치구 마을활동가 직무역량 강화 35 - 자치구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등자치구 통합공모사업 운영 지원 408	353	-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지원 180 - 자치구 마을활동가 직무 역량강화과정 66 - 자치구 마을생태계 기반 조성 107
마을공 동체 홍보· 전파	343	- 마을공동체 성과 확산 167 - 대외협력 연계망 구축 26 - 마을박람회 개최 105 - 마을공동체 무료급식 활동지원 45	341	-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 기반구축 132 - 대외협력 연계망 구축 48 - 대외 홍보 지원, 확산 161
서울형 커뮤니 티거점 활성화 지원 사업	518	- 미래세대 커뮤니티 활성화 218 -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300	772	- 공동체공간 활성화 211 - 서울형 커뮤니티활성화 561
찾아가 는 동	1,008	- 마을공동체 조성지원 129	동 마 1,361	- 마을자치조성지원 134 - 현장지원연구 90

구분		2018년 도예산(안)	산출기초(안)	2019년도 예산(안)	산출기초(안)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 현장지원연구 69 - 마을활동가 전문인력 성장지원 92 - 인건비(13인) 628 - 운영비 90	을 자 치 생 태 계 조 성 지 원	- 전문인력 교육 개발 및 운영 144 - 지원단 인건비 993
	서울형 주민 자치 시범 사업	836	- 전문 교육 개발 및 운영 110 - 현장지원연구 84 - 사례기록 60 - 민관협력 지원 10 - 인건비 (10인) 493 - 운영비 79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밥차”사업은 그 취지 자체는 좋은 사업일 수 있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특정 자치구 편중적 사업 시행 및 일반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동일 사업에 서울시와 동 센터에서 보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등의 지적이 있었는바, 동 사업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은 예산집행실적도 극히 저조하고(2017년 49.6%, 2018년 9월말 기준 50%), 재위탁 등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바, 사업 중단을 포함한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밥차”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무력시키는 행위로, 각 사업마다 세부 산출기초별 예산 편성 자료 제출을 통해 의회의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집행 현황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단위:천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산액 (반납액)
2016	6,434,564	5,505,928	434,963	470,338
2017	5,218,436	4,825,138	82,898	102,857
2018	5,656,594	2,380,781(42.0%)	1,007,302	-

○ 2018년도 동 센터의 9월말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42.0%로 극히 저조하고, 특히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26.2%, 29.1%로 저조함에도 2019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업명	예산과목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 (9/30까지)	예 산
	총계	5,656,594	2,380,781	5,481,521
인건비	계	1,404,000	832,742	1,607,414
운영비	계	450,000	136,887	504,941
사업비	계	3,802,594	1,411,152	3,369,166
	마을공동체정책연구	235,000	63,039	247,000
	마을공동체활동가 역량강화	216,500	63,156	294,500
	자치구지역공동체기 반조성지원	609,712	109,410	352,700
	마을공동체홍보전파	378,546	214,682	341,446
	서울형커뮤니티거점 활성화지원사업	544,400	237,255	772,000
동마을자치생태계 조성 지원	1,818,436	723,610	1,361,520	

○ 또한, 협약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센터 사업계획은 전년도 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8년 2월말에 제출하는 등 사업 수행에 있어 협약서 미준수 등 불성실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 · 수탁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①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 승인내역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일	승인일
2016년	2016.01.14	2016.02.17
2017년	2017.03.03	2017.03.15
2018년	2018.02.26	2018.03.08

- 동 센터는 2017회계연도 결산시 2017년 5월 17일 센터 사무 공간 이전 개소식에 따른 행사비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없었던 통계목(‘행사운영비’)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3백만원) 하였고, 서울마을상(賞) 제정·운영, 포상금 지급 및 마을주간 홍보를 위하여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사업으로 5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는 등 총 4건에 6천 7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률 (불용액)
사업명	사업구분		감액	증액				
사무관리비	운영비	176,328	△3,000		17-05-08	179,793	161,590	18,203 (10.1%)
행사운영비		0		3,000	17-12-13			
공공운영비		41,215	△6,465		17-12-13	34,750	24,403	10,347 (29.7%)
서울형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585,826	△55,000		17-10-17	530,826	492,652	38,174 (7.1%)
마을공동체홍 보·전파		428,400		55,000		483,400	476,748	6,652 (1.3%)
찾.동 마을활동가 전문역량 지원	사업비	111,505	△2,551		17-10-26	108,954	108,411	543 (0.4%)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지원		96,000		2,551		98,551	98,549	2 (0.0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변경사용(2017.5.8.)한 후, 연도말(2017.12.13.)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공운영비’에서 646만원을 재차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변경한 예산인 ‘사무관리비’는 1천8백만원이 불용처리되어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종료한 사업(마을교육생태계 조성지원사업, 5억7천만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금이 증가하는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동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지원, 동마을 자치생태계 조성 지원,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등 지역공동체 담당관 소관 대다수의 업무가 마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마을사업의 민간위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는바, 동 사무가 협약서상 위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울혁신기획관의 민간위탁기관에 사업 떠넘기기식 행태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위상,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의 책임감있는 사업수행과 함께 서울혁신기획관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더. 지역 협치 활성화 사업

- 동 사업은 자치구별 민-관 협치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한 공공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하의상달식의 민주적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35억 3천 4백만원(전년 대비 23.5%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102,976	(x-) 2,802,976	(x-) 3,534,197	(x-) 731,221	(x-) 23.5
사무관리비	(x-) 272,976	(x-) 272,976	(x-) 434,197	(x-) 161,221	(x-) 59
민간경상사업 보조	(x-) 0	(x-) 0	(x-) 400,000	(x-) 400,000	(x-) 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2,830,000	(x-) 2,530,000	(x-) 2,700,000	(x-) 170,000	(x-) 6

- 동 사업 중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은 시민주체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와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36개월 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 및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민협력플랫폼 >

- ❖ 정의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개방성 · 과정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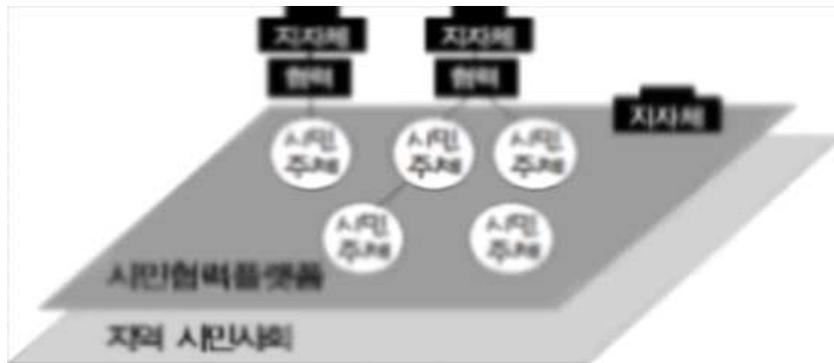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사람**(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공간 : 사업 시작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확보
- 사람 : 민간단체와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역 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자치구 시민 주체의 소통·협력 촉진, 지역사회 공공문제 해결 촉진
- 지역 내 풀뿌리단체, 중간지원단체(조직), 지자체 등의 연계망 확대·조직화
- 시민 주체의 자립을 위해 최대 3년간(36개월)의 지원을 거쳐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 설립 및 운영



〈시민협력플랫폼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관계〉

□ **총 9개** : 성동·광진·동대문·강북·은평·서대문·마포·관악·강동구(2016년~2018년)

(단위 : 천원)

자치구	사업비	사업기간	컨소시엄 단체	2년차 사업종단										
성동구	100,000	'16.11~' 17.11	<table border="1"> <tr><td>대표단체</td><td>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td></tr> <tr><td>참여단체</td><td>성동청소년문화의집</td></tr> <tr><td>참여단체</td><td>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td></tr> <tr><td>참여단체</td><td>성동평화의집</td></tr> </table>	대표단체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참여단체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참여단체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참여단체	성동평화의집	종단 (산정 후 포기 2017.11.13.)		
대표단체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참여단체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참여단체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참여단체	성동평화의집													
광진구	100,000	'16.11~' 18.11	<table border="1"> <tr><td>대표단체</td><td>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td></tr> <tr><td>참여단체</td><td>광진복지네트워크</td></tr> <tr><td>참여단체</td><td>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td></tr> <tr><td>참여단체</td><td>광진마을공동체네트워크</td></tr> <tr><td>참여단체</td><td>광진문화예술인네트워크 다락</td></tr> </table>	대표단체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참여단체	광진복지네트워크	참여단체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	광진마을공동체네트워크	참여단체	광진문화예술인네트워크 다락	
대표단체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참여단체	광진복지네트워크													
참여단체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	광진마을공동체네트워크													
참여단체	광진문화예술인네트워크 다락													
동대문구	100,000	'16.11~' 17.11	<table border="1"> <tr><td>대표단체</td><td>(사)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td></tr> <tr><td>참여단체</td><td>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td></tr> <tr><td>참여단체</td><td>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td></tr> <tr><td>참여단체</td><td>삶터 사회적협동조합</td></tr> <tr><td>참여단체</td><td>(사)푸른사람들</td></tr> </table>	대표단체	(사)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참여단체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	참여단체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참여단체	삶터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단체	(사)푸른사람들	종단 (신청철회, 2017.11.27.)
대표단체	(사)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참여단체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													
참여단체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참여단체	삶터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단체	(사)푸른사람들													

강북구	99,976	'16.11~' 18.11	대표단체	강북마을모임	
			참여단체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참여단체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은평구	100,000	'16.10~' 18.11	대표단체	(사) 은평상상	
			참여단체	생태보전시민모임	
			참여단체	(사)터올림	
서대문구	100,000	'16.12~' 18.06	대표단체	(사)서대문사람숲	중단 (사업 진행 중 중단, 2018.6.)
			참여단체	(사)한국로하스협회	
			참여단체	서대문마을넷	
			참여단체	소셜아트플래튼	
마포구	100,000	'16.12~' 18.12	대표단체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참여단체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참여단체	마포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관악구	100,000	'16.11~' 18.10	대표단체	(사)관악주민연대	
			참여단체	(사)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참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참여단체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강동구	100,000	'16.12~' 17.12	대표단체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중단 (미신청)
			참여단체	청년아지트 강동팻	
			참여단체	강동마을모임 동동	
			참여단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 총 5개 : 성북·도봉·양천·강서·구로구

- 2017년 신규지원으로 2019년 보조금 대상 사업임.

(단위 : 천원)

자치구	사업비	사업기간	컨소시엄 단체	
성북구	99,992	'17.10~'18.10	대표단체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참여단체	성북동천
			참여단체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도봉구	100,000	'17.10~'18.10	대표단체	사단법인도봉시민회
			참여단체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참여단체	참교육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여단체	동북이어서
양천구	95,656	'17.08~'18.08	대표단체	양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참여단체	양천사회적경제협동조합
			참여단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100,000	'17.11~'18.11	대표단체	강서영천환경운동연합
			참여단체	(사)누리마음연구소
			참여단체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단체	(사)상상마을

구로구	100,000	'17.11~'18.11	대표단체	(사)구로시민센터
			참여단체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참여단체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함께
			참여단체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단체	공동종합사회복지관
			참여단체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참여단체	아하!열린교육센터
			참여단체	회원종합사회복지관

- 동 사업은 3년을 목표로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에는 3년차에 접어드는 성북·도봉·양천·강서·구로구의 시민협력 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임.
- 동 사업은 완수하여야 하는 과업이 있는 사업임에도 중도 포기 자치구와 단체 속출(성동구, 동대문구, 강동구, 서대문구) 등 보조 사업자의 무책임한 사업 집행으로 행정신뢰를 훼손한바 있으나, 이미 투입된 재원의 회수 및 패널티 부여 등이 미흡하였음.
- 특히, 관주도로 시민사회의 개별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민간의 자율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까지 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동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와 그 성과가 천만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이 보여주기식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보조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러.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 동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83억 2천 7백만원(전년 예산 57억 7천만원 대비 44.2%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770,000	(x-) 5,770,000	(x-) 8,326,000	(x-) 2,556,000	(x-) 44.2
사무관리비	(x-) 40,000	(x-) 40,000	(x-) 40,000	(x-) 0	(x-) 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5,730,000	(x-) 5,730,000	(x-) 8,286,000	(x-) 2,556,000	(x-) 44.2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중간지원조직 현장조사 10,000,000원 = 10,000천원	○ 중간지원조직 현장조사 10,000,000원 = 10,000천원
	○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소통 지원 = 25,000천원 - 소통활성화 25,000,000원 = 25,000천원	○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소통 지원 25,000,000원 = 25,000천원
	○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5,000,000원 = 5,000천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매뉴얼 제작 5,000,000원 = 5,000천원
	증감사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마을센터) 25개 자치구*165,600,000원 = 4,140,000천원	○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위탁형) 18개 자치구*395,840,000원 = 7,125,120천원
	○ 통합공모사업 25개 자치구*63,600,000원 = 1,590,000천원	○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단체형) 7개 자치구*165,840,000원 = 1,160,88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사유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 전환(단체형→위탁형)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2,556,000천원)	

- 2018년 기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를 살펴보면, 민간위탁(10), 직영(3), 단체(12)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형의 경우는 자치구당 3억9천5백만원, 단체형의 경우는 1억6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관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현재 위탁형은 10개이나, 예산은 18개로 편성하고 있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자치구 수)		88	18	22	25	25	25
민간위탁	외부 전문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		2	2	2	7	10
직 영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업무 수행		4	5	6	3	3
단 체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을 희망하는 민간조직이 업무 수행	8		15	15	14	12
지 원 단	행정공무원이 마을활동가를 선정하여 업무 수행				2	1	-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01~12월까지
- 지원대상 : 자치구, 자치구 마을센터
- 사업수행주체 : 25개 자치구
- 사업의 주요내용

<자치구 마을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

- 주민 스스로 지역 활동을 할 수 있게 행정과 주민 사이에 어려움이 없게 돕는 중간지원조직 지원

- 상담 및 컨설팅, 주민교육, 주민모임 간담회(관계망 형성), 마을활동가 양성, 지역자원 연계 등
- 2019년 마을센터 운영 안정화를 위한 민간위탁기관으로의 전환 적극 유도

○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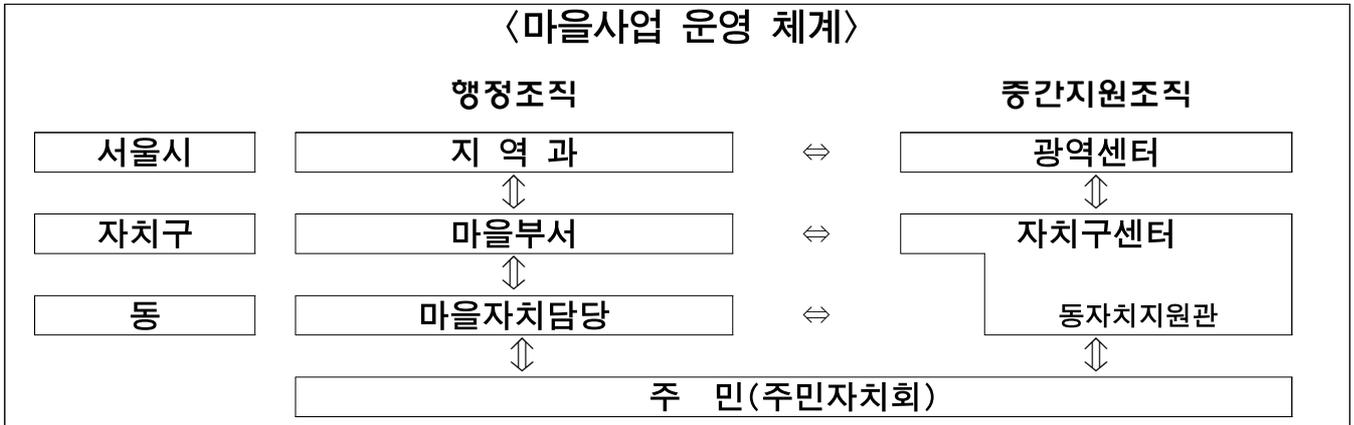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위탁형) : 18개 자치구 * 395,840천원 = 7,125,120천원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단체형) : 7개 자치구 * 165,840천원 = 1,160,880천원

- 동 사업은 그 동안 서울혁신기획관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마을사업을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과 직접 인접해 있는 자치구에서 마을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에게 자치구 마을사업비 및 마을센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7) 위배 소지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보조금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시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교부할 수는 없는데, 자치구 스스로가 자치구별 필요에 의해서 동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보조금 교부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동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 동 사업은 마을공동체 조성분야 사업 운영을 통해 민원과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마을, 복지, 자치 중심의 민관협력적 행정기관으로 조성 하려는 것으로, 17억 7천 9백만원(전년예산 25억9천8백만원 대비 31.5%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598,000	(x-) 2,598,000	(x-) 1,779,180	(x-) △818,820	(x-) △31.5
사무관리비	(x-) 20,000	(x-) 20,000	(x-) 20,000	(x-) 0	(x-) 0.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2,578,000	(x-) 2,578,000	(x-) 1,759,180	(x-) △818,820	(x-) △31.5

〈세부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찾동 마을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네트워크 회의 지원 5,000,000*4회 = 20,000천원	○ 찾동 마을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네트워크 회의 지원 5,000,000*4회 = 20,000천원
	증감사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주민참여지원 = 512,000천원 - 공모사업비 3,000,000*106개동 = 318,000천원 - 운영비 1,500,000*106개동 = 159,000천원 - 컨설팅 5,000,000*7개구 = 35,000천원	○ 마을계획 = 759,180천원 - 3단계 6개동 사업비 10,000,000*6개동 = 60,000천원 - 3단계 6개동 인건비 23,654,000*6개동 = 141,924천원 - 4단계 7개동 사업비 32,300,000*7개동 = 226,100천원 - 4단계 7개동 인건비 47,308,000*7개동 = 331,156천원
	○ 마을계획 = 2,066,000천원 - 1년차 8개동 347,200,000원 = 347,200천원 - 2년차 6개동 493,800,000원 = 493,800천원 - 3년차 35개동 1,225,000,000원 = 1,225,000천원	○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추진 지원 = 1,000,000천원 - 성동구 8개동 29,875,000*8개동 = 239,000천원 - 성북구 2개동 45,500,000*2개동 = 91,000천원 - 도봉구 6개동 41,000,000*6개동 = 246,000천원 - 금천구 10개동 42,400,000*10개동 = 424,000천원
	증감사유	
- 주민참여지원사업 종료, 전액 감액(△512,000천원 감소) - 찾동 4단계 자치구 4개구 7개동 지원에 따른 마을계획 사업비 및 인건비 감소(△1,306,820천원 감소) - 찾동 1단계 자치구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추진 지원(1,000,000천원 증가)		

○ 동 사업은 당초 ‘주민참여 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조성’으로 구성되는 사업이나 2018년도에는 마을기금 신청동이 없었으며 2019년에는 마을기금 사업은 중단하였음.

※ 사업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539,350천원	2,578,000천원	1,759,180천원
주민참여사업	▶ 주민참여 지원사업 : 1,403,500천원 - 동별 4.5백만원 - 구별 5백만원 (일부동 추진 자치구 3백만원)	▶ 주민참여 지원사업 : 512,000천원 - 동별 4.5백만원 - 구별 5백만원	(사업 종료)
마을모금활동지원(마을기금)	▶ 마을기금 형성체계 지원사업 : 139,500천원 - 동별 7.5백만원 - 구별 1백만원	(신청 동 없음)	(사업 종료)
마을계획	▶ 마을계획 : 2,996,350천원 - 사업비(동별) 1단계 10,000천원 2단계 32,300천원 3단계 18,400천원 - 인건비(동별) 2단계 42,698천원 3단계 20,170천원	▶ 마을계획 : 2,066,000천원 - 사업비(동별) 2단계 10,000천원 3단계 32,300천원 4단계 18,400천원 - 인건비(동별) 3단계 50,000천원 4단계 25,000천원	▶ 마을계획 : 759,180천원 - 사업비(동별) 3단계 10,000천원 4단계 32,300천원 - 인건비(동별) 3단계 23,654천원 4단계 47,308천원
서울형주민자치회1단계	-	-	▶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지원(4개 구 26개동) : 10억원 - 성동구 8개동 : 239백만원 - 성북구 2개동 : 91백만원 - 도봉구 6개동 : 246백만원 - 금천구 10개동 : 424백만원

〈자치구별 마을계획 사업 지원액〉

(단위 : 천원)

2017년					
구분	자치구	금 액	구분	자치구	금 액
계		4,539,350	2 단 계	강 서 구	314,994
1 단 계	소 계	434,500		구 로 구	221,996
	성 동 구	127,000		영 등 포 구	305,994
	성 북 구	117,000		동 작 구	292,494
	도 봉 구	108,000		관 약 구	248,996
	금 천 구	82,500		강 동 구	297,494
소 계		3,603,430	3 단 계	소 계	501,420
2 단 계	종 로 구	160,498		중 구	21,000
	동 대 문 구	279,494		용 산 구	145,140
	노 원 구	310,494		광 진 구	140,640
	은 평 구	296,994		중 량 구	21,000
	서 대 문 구	279,494		강 북 구	131,640
	마 포 구	288,494		서 초 구	21,000
	양 천 구	305,994		송 파 구	21,000
2018년					
구분	자치구	금 액	구분	자치구	금 액
계		2,578,000	2 단 계	영 등 포 구	105,000
2 단 계	소 계	1,225,000		동 작 구	105,000
	종 로 구	35,000		관 약 구	70,000
	동 대 문 구	105,000		강 동 구	105,000
	노 원 구	105,000	3 단 계	소 계	1,353,000
	은 평 구	105,000		중 구	150,300
	서 대 문 구	105,000		용 산 구	232,600
	마 포 구	105,000		광 진 구	228,100
	양 천 구	105,000		중 량 구	154,800
	강 서 구	105,000	강 북 구	219,100	
구 로 구	70,000	서 초 구	163,800		
			송 파 구	204,300	
2019년					
구분	자치구	금 액	구분	자치구	금 액
계		759,180	4 단 계	소 계	557,256
3 단 계	소 계	201,294		중 구	79,608
	용 산 구	67,308		중 량 구	159,216
	광 진 구	67,308		서 초 구	159,216
	강 북 구	67,308		송 파 구	159,216

〈서울형 주민자치회1단계 사업 개요〉

- 대 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 한 4개 구 26개 동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 동수	26	91	141	322	351	424

※ 서울형 주민자치회 설치 단계별로 지원

- 사용 주체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분과별 의제 발굴·결정을 위한 숙의·토론 등 주민총회 운영비
- 자치계획 의제 실행비
- 추진 프로세스

자치계획 수립
(예산계획 포함)

- 시 기 : 주민총회 이후 ~ 1월
- 주 체 : 주민자치회

보조금 심의,
사업승인

- 시 기 : 매년 2월
- 주 체 : 서울시

사업비 교부

- 시 기 : 매년 3월
- 방 법 : 시(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 주민자치회

사업실행·정산

- 시 기 : 매년 3월 ~ 12월
- 방 법 : 주민자치회 → 자치구 → 시

- 소요예산(2019년) : 1,000백만원

- 성동구 8개동 239백만원, 성북구 2개동 91백만원, 도봉구 6개동 246백만원, 금천구 10개동 424백만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동 사업 중 마을기금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대비 기금 모집 실적이 극히 미흡하였으며, 2018년에는 마을기금사업 신청동이 없다는 사유로 동 사업을 중단하고 있음.

- 이는 예산투입대비 성과미흡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마을사업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의 마을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을사업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마을사업(주민참여지원사업(종료), 마을기금(종료), 마을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1단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25개 전 자치구 대상 마을센터 지원), 지역협치활성화 사업(시민협력 플랫폼 지원사업(지역의 시민단체 거점 조직 지원)), 지역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사업(동단위계획형, 구단위계획형) 등 그 내용과 체계가 중복적이고 복잡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업의 경우 사업 통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즉,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관 주도의 마을사업은 지속성,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바,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앞서 언급한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과 같이 마을계획 사업에서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8) 위배 소지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기초 자치단체에 사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보조금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과 편성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8)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교부할 수는 없는바, 자치구 스스로가 자치구별 필요에 의해서 동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동 사업 역시 보조금 교부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동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삭감 조정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버. 시민참여예산 사업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세출예산 중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서울 적정기술 컨퍼런스 개최”(1억4천만원),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5천만원), “사람이 아름다운 약초마을 만들기”(1천만원),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주인 되기”(5억원) “창작의 시대 : 서울청년들”(3억6천만원),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5억5백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150억 5천 4백만원(2018년도 13개 사업, 102억 7천 3백만원, 46.5% 증액)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8개 사업, 150억 5천 4백만원〉

(단위 : 천원)

2018년 시민참여 예산(2018년 10월 30일 기준)			2019년 시민참여 예산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집행액 (집행률)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합계	10,273,000		합계	15,053,760	
사회혁신담당관	110,000		사회혁신담당관	140,000	
강남구 공구도서관 운영(시민참여)	50,000	50,000 (100%)	서울 적정기술 컨퍼런스 개최(시민참여)	140,000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시민참여)	60,000	0 (0%)	지역공동체담당관	14,048,000	
지역공동체담당관	9,913,000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시민참여)	2,388,000	
우리마을 유희공간, 우리마을 유희~공간으로!(시	100,000	100,000 (100%)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11,100,000	

민참여)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시민참여)	2,460,000	2,460,000 (100%)		지원(시민참여)	
합정동 꾸머 로드(시민참여)	10,000	10,000 (100%)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시민참여)	50,000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시민참여)	20,000	20,000 (100%)		사람이 아름다운 약초마을 만들기(시민참여)	10,000
지역기반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시민참여)	30,000	30,000 (100%)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주인 되기(시민참여)	500,000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 참여)	7,050,000	7,050,000 (100%)		청년정책담당관	360,260
우리동네 마을밥집 지원(시민참여)	200,000	200,000 (100%)		창작의 시대 : 서울청년들(시민참여)	360,260
				갈등조정담당관	505,500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시민참여)	505,500

- 본 사업들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접수 및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지나치게 자치구 사무에 편중되는 등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의 “참여예산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 또한, 동 사업들은 대부분 세부산출 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아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거수기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2011. 9.)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시행 중인 제도인바,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구의 민원해결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구분의 불명확화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 급증 및 광역차원의 행정계획에 대한 재원 부족, 인기영합주의적 예산편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있어서 참여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실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은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집행률 0%),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참여예산에 사용되는 엠보팅은 서울시민이 아닌 타시도 거주자도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 점, 연령, 성별, 거주지 통계 등을 알 수 없어 참여 시민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19년도 시민참여 사업 중 “서울 적정기술 컨퍼런스 개최”(1억4천만원) 사업은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려는 사업으로 적정기술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며, 동 사업이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추가적으로, 동 사업은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해외전문가 초청”은 ‘외빈초정경비’로 편성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주인 되기”(5억원)사업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는바, 추가 사업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공간 자산화 시범사업” 과 “마을 공간 자산화 정책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등인바, 동 사업이 시민참여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주인 되기(시민참여) 편성예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위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간만들기(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마을공간만들기 = 500,000천원 - 마을 공간 자산화 정책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 100,000천원 - 마을 공간 자산화 시범사업 추진 = 4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공감대 형성사업(5천만원) ▶ 시범사업 용역 운영(1억8천만원) ▶ 컨설팅 및 교육사업(1억이천만원) ▶ 클라우드펀딩 시범사업(5천만원)

서. 동단위 및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시민참여)

- 동단위 계획형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성 강화를 위하여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의 실행의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동별 사업비(3천만원 이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억 8천 8백만원(전년 24억6천만원 예산 대비 2.9%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460,000	(x-) 2,460,000	(x-) 2,388,000	(x-) △72,000	(x-) △2.9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 1,509,540	(x-) 1,509,540	(x-) 1,970,210	(x-) 460,670	(x-) 30
자치단체자본 보조	(x-) 950,460	(x-) 950,460	(x-) 417,790	(x-) △532,670	(x-) △56

〈 세부 산출 기초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 실행비 등 = 1,509,540천원 - 21개자치구, 71개동, 289개 사업 = 1,509,540천원	○ 사업 실행비 등 = 1,970,210천원 - 24개자치구, 76개동, 350개 사업 = 1,970,21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 950,460천원 - 24개자치구, 58개동, 102개 사업 = 950,460천원	○ 시설비 등 = 417,790천원 - 16개자치구, 30개동, 41개 사업 = 417,790천원

〈2019년 동회의 시민참여예산 규모 및 선정동 현황〉

○ 사업규모 : 81개동 2,388백만원

자치구	계	2019년 선정 동(洞)	2018년 선정동
합 계	81		84
종로구	1	청운효자동	4 청운효자동, 이화동, 혜화동, 사직동
중구	1	황학동	1 다산동
용산구	2	효창동, 한남동	1 이촌제1동
성동구	8	마장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용답동	6 마장동, 성수1가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행당1동, 용답동
광진구	2	구의3동, 중곡4동	1 능동

동대문	3	전농2동,제기동,이문1동	4	이문1동, 전농2동, 제기동, 장안제2동
중랑구	1	면목본동	1	면목본동
성북구	8	월곡2동,동선동,종암동,길음1동보문 동,삼선동,성북동,정릉2동	5	종암동, 월곡2동, 길음1동, 정릉2동, 정릉4동
강북구	2	번제3동, 삼각산동	1	미아동
도봉구	9	창2동, 창4동, 창5동, 도봉1동, 도봉2 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쌍문1 동	6	쌍문1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 동
노원구	3	공릉2동, 상계1동, 중계4동	4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하계1동
은평구	3	갈현1동, 응암2동, 역촌동	4	갈현1동, 응암2동, 역촌동, 녹번동
서대문	3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연희동	4	연희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홍제1동
마포구	3	공덕동, 서교동, 성산2동	4	공덕동, 서교동, 성산2동, 망원1동
양천구	3	목2동, 신월5동, 신정3동	4	목2동, 신월5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	3	화곡3동, 화곡6동, 방화3동	4	화곡6동, 화곡3동, 방화3동, 공항동
구로구	2	개봉1동, 오류1동	5	개봉1동, 오류1동, 구로1동, 신도림동, 고척2동
금천구	10	독산4동, 시흥5동, 독산1동가산2,독산 2,독산3,시흥1,시흥2,시흥3,시흥4	6	독산1동, 독산4동, 시흥5동, 독산2동, 시흥4동, 시 흥3동
영등포	3	여의도동, 문래동, 양평2동	4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대림2동
동작구	3	노량진1동, 대방동, 사당2동	5	노량진1동, 사당2동, 대방동, 상도3동, 상도1동
관악구	2	성현동, 서림동	4	성현동, 서림동, 청룡동, 신림동
서초구	1	양재1동	1	내곡동
강남구	1	일원1동	1	개포4동
송파구	1	오금동	1	장지동
강동구	3	천호3동, 길동, 명일2동	3	명일2동, 천호3동, 길동

〈2019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개요〉

- 사업기간 : 2018.01.01 ~ 2019.12.31.
 - 1년차(2018년) : 운영 동 선정,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 선정, 실행계획 수립
 - 2년차(2019년) : 사업 실행 및 관리
- 사업범위 :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가 해당됨
- 지원금액 : 동(洞) 별 3000만원 이내
- 동(洞) 선정기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동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동을 중심으로 선정

○ 현 황

- 지원대상 : 23억 8800만원. 361건

- 선 정 동 : 25개 자치구 81개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동 : 4개구 26개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 3단계 마을계획동 : 16개구 41개동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 추진동 : 2개구 9개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단계 자치구 : 5개구 5개동

- 운영절차

- 1. 동회의 운영체계 마련 : 동회의가 주도하고 동주민센터가 지원하는 동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규약 마련
- 2.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 동현황제공, 지역자원조사, 의제발굴, 공유시스템 제작
- 3. 발굴의제 민관 협력체계 마련 : 발굴된 의제를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동회의와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 마련
- 4. 실행계획 수립 :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발전
- 5. 마을총회 :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 실행의제로 선정
- 6.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선정의제 최종 승인
- 7. 선정의제 실행 : 실행의제별로 실행주체의 세부역할, 실행방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기반으로 의제 실행
- 8. 성과공유 및 평가 : 지속적인 동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도출

○ 동 사업은 다양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제출되었으나, 사업 내용의 불명확성 및 세부산출 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인건비’, ‘업무추진비’까지 편성하는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기존 자치구에 교부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 ‘자치단체자본보조’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만 하고 제대로 관리·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책임감 있는 사업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실정임.

○ 관주도로 의제가 미리 결정되는 등 동 지역회의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참여예산 현장설명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자치구에서는 추가적인 업무 분장으로 인한 불만 과중, 전담 인력 부족 호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목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2018년, 2019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현장설명회 결과보고〉

□ 현장 설명회 주민 등 의견 요약

○ 중·장기적 해결 과제 상주

-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존재.
- 여전히 관 주도 경향이 짊어서 동지역회의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음.
 - ▶ 일부 동의 경우 소수 주민과 관 주도로 의제가 이미 결정된 듯한 인상을 받음.
- 잦은 민·관, 민·민 갈등에 의한 피로 누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우려.

○ 자치구·동 담당자 불만 존재

- 자치구 기획예산과는 기존 업무 이외에 추가 업무 분장에 대한 불만 제기.
- 동은 사업 전담 인력이 없어서 담당자의 업무 과중.

○ 실제 주민 참여율 저조

- 생업으로 다양한 의제 발굴이나 잦은 회의 참석이 쉽지 않고 특히 행정에서 요구하는 젊은 층의 참여는 거의 힘든 것이 현실.
- 동회의 진행을 위한 운영비가 없어서 개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참여 의지도 저하

○ 민·관 소통 및 정보 공유 미흡

-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이 미흡. 사업의 완성도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일부 관 주도 사업의 경우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경과를 알 수 없음.
-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인 검토 과정에서 주민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음.

○ 예산 부족 및 집행 시 융통성 결여

- 동당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음. 또한, 단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및 독거어르신 지원 사업과 같은 장기적·지속적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예산 사용에 제약이 많음. 비목 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필요.

○ 사업 목적·취지 불분명

- 의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방향 잡기가 힘들. 구체적인 사례 제시 요구.
- 기존 주민참여사업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 부담은 증가.
- 주민들의 관심도 낮음. 시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필요.

○ 기타 의견

- 일정이 너무 촉박.
- 동회의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편성 요청.
- 주민들 숙원 사업인 경우 지침 상 제한되었더라도 시에서 긍정적 검토 요청.
 - ▶ 우범지역에 CCTV 및 LED 가로등 설치
 - ▶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지역에 이동식 CCTV 설치 등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은 자치구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및 민관협치 사업의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111억원의 예산(전년 예산 70억5천만원 대비 57.4% 증액)을 편성 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7,050,000	(x-) 7,050,000	(x-) 11,100,000	(x-) 4,050,000	(x-) 57.4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x-) 4,416,600	(x-) 4,416,600	(x-) 7,756,250	(x-) 3,339,650	(x-) 75
자치단체자본보 조	(x-) 2,633,400	(x-) 2,633,400	(x-) 3,343,750	(x-) 710,350	(x-) 26

○ 구단위 계획형은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구별 협치협의회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자치구별로 10억원 이내로 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것임.

※ 2019년에는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11개 자치구를 지원할 예정임.

〈사업 지원 규모〉

지역계획형의 구분		일반형	계획형 (융합형)	비고
區 단위	기존 참여예산	● (5억원)	● (10억원 이내)	- 일반형은 기존 주민참여예산 지역형과 동일 (시 민참여예산담당관 주관) - “계획형(융합형)”의 경우 통합비용(2억원 이내) 부여
	지역사회 혁신계획	×		
洞 단위	1개 동 : 3천만원			- 동회의 운영을 통한 당단위 계획형 : 81개 동 -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추진 자치구에 추가 인센티브 고려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성동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713,500,000 = 713,500천원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7,756,250천원
	○ 동대문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579,000,000 = 579,000천원	- 종로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730,030,000원 = 730,030천원
	○ 도봉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756,000,000 = 756,000천원	- 성동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819,000,000원 = 819,000천원
	○ 서대문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405,000,000 = 405,000천원	- 동대문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73,500,000원 = 373,500천원
	○ 금천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02,500,000 = 302,500천원	- 도봉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1,006,200,000원 = 1,006,200천원
	○ 영등포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945,000,000 = 945,000천원	- 은평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 699,220,000원 = 699,220천원
	○ 관악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997,000,000 = 997,000천원	- 서대문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932,600,000원 = 932,60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688,300,000원 = 688,300천원 - 금천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32,300,000원 = 332,300천원 - 영등포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687,000,000원 = 687,000천원 - 동작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740,000,000원 = 740,000천원 - 관악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748,100,000원 = 748,1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236,500,000 = 236,500천원 ○ 동대문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421,000,000 = 421,000천원 ○ 도봉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294,000,000 = 294,000천원 ○ 서대문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645,000,000 = 645,000천원 ○ 금천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697,500,000 = 697,500천원 ○ 영등포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55,000,000 = 55,000천원 ○ 관악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000,000 =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3,343,750천원 - 종로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19,970,000원 = 319,970천원 - 성동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231,000,000원 = 231,000천원 - 동대문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526,500,000원 = 526,500천원 - 도봉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43,800,000원 = 43,800천원 - 은평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50,780,000원 = 350,780천원 - 서대문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117,400,000원 = 117,400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261,700,000원 = 261,700천원 - 금천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667,700,000원 = 667,700천원 - 영등포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13,000,000원 = 313,000천원 - 동작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10,000,000원 = 310,000천원 - 관악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201,900,000원 = 201,900천원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구마다 구별 협치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구별 협치협의회가 구성된 자치구에 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자치구 길들이기 및 강요된 협치 사업의 성격은 없는지 여부와 향후 사업이 자치구 떠넘기기식으로 진행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어.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

-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 관리”사업(6억 1천만원),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사업(2억 2천 9백만원),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2억 9천 5백만원) 등에 총 14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대비 64.2% 증액)하고 있음.

<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갈등조정담당관	895	895	1,470	575	64.2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872	872	1,446	574	65.8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872	872	1,446	574	65.8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61	61	61	-	-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190	190	229	39	20.5
갈등관리 역량강화	51	51	71	20	39.2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36	236	246	10	4.2
갈등관리 실태평가	39	39	39	-	-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295	295	295	-	-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시민참여)	-	-	505	505	100
행정운영경비	23	23	24	1	4.3
기본경비	23	23	24	1	4.3
기본경비	23	23	24	1	4.3

-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 중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갈등관리의 이해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형태 갈등관리 교육 및 현장 맞춤형으로 자치구별 갈등관리 교육을 통하여 자치구 담당자들의 갈등 대응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7천 1백만원(전년 5천 1백만원 예산 대비 39.1%)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51,140	(x-) 51,140	(x-) 71,140	(x-) 20,000	(x-) 39.1
사무관리비	(x-) 51,140	(x-) 51,140	(x-) 71,140	(x-) 20,000	(x-) 39.1

〈세부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 등 = 19,800천원	○ 자치구 갈등관리 교육 = 28,500천원
	- 강사료 350,000원*40회 = 14,000천원	- 강사료 350,000원*2회*15개소 = 10,500천원
	- 교재료 4,000원*1,000부 = 4,000천원	- 원고료 100,000원*2명*15개소 = 3,000천원
	- 소모품비 3,000원*600명 = 1,800천원	- 교재비 4,000원*100명*2회*15개소 = 12,000천원
	○ 갈등관리 워크숍 = 10,340천원	- 소모품비 100,000원*2회*15개소 = 3,000천원
	- 원고료 130,000원*6명 = 780천원	○ 서울시 갈등관리 교육 = 9,000천원
	- 사회,발제 수당 300,000원*6명*2회 = 3,600천원	- 강사료 350,000원*3명*4회 = 4,200천원
	- 소규모그룹별지도 150,000원*8명*2회 = 2,400천원	- 원고료 100,000원*2명*4회 = 800천원
	- 인쇄비 4,000원*60명*2회 = 480천원	- 교재비 4,000원*100명*4회 = 1,600천원
	- 운영비(다과비 등) 7,000원*60명*2식*2회 = 1,680천원	- 소모품비 100,000원*4회 = 400천원
	- 소모품비 = 1,400천원	- 운영비(다과비 등) 5,000원*100명*4회 = 2,000천원
	○ 갈등관리 교육 영상제작 = 21,000천원	○ 갈등관리 워크숍(전국 지자체 공동연수) = 12,640천원
	- 사례 동영상 제작 21,000,000원*1개 = 21,000천원	- 사회,발제수당 300,000원*6명 = 1,800천원
		- 원고료 130,000원*6명 = 780천원
		- 소규모그룹별지도 200,000원*4명 = 800천원
	- 인쇄비 9,000원*80명 = 720천원	
	- 운영비(다과비 등) 8,000원*80명*6식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 3,840천원
		- 숙박비 50,000원*80명 = 4,000천원
		- 소모품비 10,000원*70명 = 700천원
		○ 갈등관리 교육 동영상 = 21,000천원
		- 사례 동영상 제작 21,000,000원*1개 = 21,000천원
	증감사유	
	교육 참여 인원 증가 및 제반 부대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감	

-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 중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갈등교육”에 2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에 대한 근거이며,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근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를 명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①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경우, 국가정책이라 함은 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말한다.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③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④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예외 :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지출 등

⑤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지방회계법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예외 : 수입대체경비(지방회계법 제26조)

㉞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㉟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㊱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
 -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여 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㊲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회계법 제33조)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예외 :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

10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한편, 동 사업 중 “갈등관리 워크숍(전국 지자체 공동연수)” 사업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연수를 서울시 재정만을 투자해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갈등조정담당관의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은 61.4%(2018년 10월 기준) 수준인바, 향후 갈등조정담당관의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이 주로 갈등진단과 평가 및 실무자 등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회의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역할 강화 통한 실질적인 갈등해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갈등조정담당관 사업별 진행률>

(단위 : 천원, 10월 말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집 행 액(집행률(%))
갈등조정담당관	894,848	549,461(61.4)
예방적갈등진단및맞춤형갈등조정 (현장중심의맞춤형갈등조정)	190,000	125,372(65.9)
갈등관리 역량강화	51,140	51,140(100)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61,000	19,046(31.2)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36,390	128,460(54.3)
갈등관리 실태평가	38,719	12,719(32.8)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295,000	193,890(65.7)

저. 인권담당관 소관 사업

-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2억 5백만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8천 5백만원), “시민인권 침해구제위원회 운영”(5천만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3억 8천 5백만원), “서울인권 컨퍼런스”(1억 3천 9백만원),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1천 8백만원) 등에 총 12억 6천 1백만원(전년대비 11.3%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인권담당관	1,421	1,464	1,261	△160	△11.3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386	1,429	1,225	△161	△11.6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1,386	1,429	1,225	△161	△11.6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1	221	205	△16	△6.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85	85	85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42	42	50	8	19.0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5	385	385	-	-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79	79	89	10	12.7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37	180	154	17	12.4
인권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68	68	68	-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	32	32	-	-
서울 인권 컨퍼런스	319	319	139	△180	△56.4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8	18	18	-	-
행정운영경비	35	35	36	1	2.9
기본경비	35	35	36	1	2.9
기본경비	35	35	36	1	2.9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 소관 “공무원 인권교육”은 필수 교육임에도 이수율 저조 및 공무원 강사의 자질 미흡, 형식적이고 부실한 교육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연초부터 충실한 계획을 세워 교육이 질을 높이고 인권교육이 연말에 형식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서울혁신기획관은 사업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사무의 집행률 또한 지나치게 저조(60.6%, 2018년 10월 기준)한바, 사업 미집행, 불성실 집행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회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인권담당관 사업별 집행률 >

(단위 : 천원, 10월 말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인권담당관	1,420,965	861,582(60.6)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1,400	219,600(99.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85,500	64,868(75.8)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41,960	30,000(71.4)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4,500	196,085(50.9)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79,000	25,000(31.6)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37,370	56,120(40.8)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	67,650	44,900(66.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000	32,000(100)
서울 인권 컨퍼런스	319,200	146,706(45.9)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00	17,482(98.2)

의사지원팀장 박희숙
입법조사관 신정희